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팽배하며 자극적인 성인문화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생활 여건, 사회 전반에 걸쳐 무엇이 옳고 그릇된 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은 기존의 사회가 중시했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 되기 쉽고, 나름대로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부적응을 경험하기 쉬워진다. 이들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청소년실업, 인권문제, 소년소녀가장등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문제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학업부적응 문제와 학업중퇴 문제, 청소년폭력과 절도, 가출, 유해업소 출입 등의 청소년비행과 우울과 신경증 등의 정서장애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 규명과 문제해결 및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학적 접근으로 시행된 연구가 주를 이룸에 따라 실태분석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검증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나 공격성향 등 심리적 요인을 다룬 연구와 청소년 문제 근절을 위한 정책제시 및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요법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청소년 문제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하고 관련 부서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하며, 청소년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및 상이한 시각을 가졌다는 점, 사회의 가치관 혼미 및 유해환경에의 무방비적 노출 등 사회적 요인과 학교교육, 학교기관, 학교제도의 정체성 등 학교 관련 요인에

의해 청소년문제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한 가족역할이 부재하고, 특히 자녀의 도덕적 인격, 자율적 행동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점 역시 청소년문제행동의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자아통제력이 부족하고,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으로 인한 좌절과 또래에 대한 지나친 동조성 역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어떠한가. 청소년 문제 관련 연구는 수행된 연구의 양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시된 대안이 대동소이하며,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청소년 문제, 비행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강화와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주장하고 있고, 가정의 기능 강화, 현 교육풍토의 개선과 청소년을 유인하는 자극적·쾌락적 사회환경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구체화시키도록 충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지도에 비교적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형법상에 나타난 청소년범죄의 유형,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과정 및 사법적 처우와 청소년을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법적으로 구속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가를 정확히 알아두는 일은 지도자로서의 자신감 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도자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이 청소년지도활동에 가장 필요한 지식으로 문제행동 관련법규와 처리절차라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심리·문화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가장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자신의 도덕성이나 법의식 수준은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성이 있음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덕성이나 법의식 수준이 낮아 미성숙한 사고를 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문용린 외, 1994:72)는 법의식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비행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거나 죄를 지으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행동을 죄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에 저촉되고, 반복해서 비행을 할 때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도 처벌에 대한 인식은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고, 우발적이고, 현실도파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를 이해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행억제에 관한 설문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결과에서도 처벌에 대한 지각 역시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비행 관련 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이고 행동의 지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사후에나 확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법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대체로 일반인은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법률 용어는 일반 용어와는 달리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

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한 목적으로 간단한 법률지식을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대학에서는 생활법률 강좌가 개설되고, 교재가 개발되었으나 대부분의 교재 내용 가운데 소년법 관련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의 법률지식을 위한 교양서적 역시 주로 결혼과 이혼 또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에 관한 책자에도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을 뿐, 청소년비행이라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다룬 법률서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사법상 청소년범죄의 유형, 소년사건의 처리과정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 및 청소년을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규를 알기 쉽게 기술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문제행동과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며,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최근의 청소년비행 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청소년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를 조사하여 법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형법에 나타난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상해, 폭행, 협박, 강간 및 추행, 주거침입 등 폭력관련 범죄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관련 범죄로 나누어 고찰한다. 또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일선의 지도자나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개괄함에 있어, 소년법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절차 및 처우에 관한 법규와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을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관련 판례 및 법률사례를 검토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청소년지도자를 맡고 있는 현장의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제행동과 청소년비행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현행법률을 중심으로 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지도 법률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청소년문제행동 및 청소년비행은 어떻게 개념정의 되며, 청소년문제행동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교사 및 상담원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자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셋째, 가해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와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항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넷째, 교사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가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지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문제행동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문제행동과 유사개념인 일탈, 범죄, 비행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 선행연구의 분석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문제행동에 관한 포괄적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 청소년문제행동 및 청소년비행의 유형을 개괄한다. 또한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현황을 공식 통계

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성인범죄와는 달리 교정과 교화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소년법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선도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를 살펴본다.

2) 청소년 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행동 및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 1999년 7월 1일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현장의 교사 및 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 자신이 얼마만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의 교사 및 청소년상담원과 서울시의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법률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청소년지도를 적절히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특히 법률지식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아울러 현행 중·고등학교의 법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이 갖고 있는 법의식 및 규범의식이 청소년문제행동 및 비행의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상관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의 필요성 및 법률교육을 위한 지침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형법상의 청소년범죄 유형 분류

형법상에 나타난 범죄의 유형을 청소년범죄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크게 폭력관련 범죄와 재산관련 범죄로 유형화하고,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상해와 폭행, 주거침입, 강간 및 추행 등을 폭력관련 범죄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을 재산관련 범죄로 분류하여 각 범죄의 구성요건, 종류 및 형벌조항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4)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 개관

본 보고서에 수록될 관련 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이 직접 비행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및 처리과정, 사법적 처우 등을 소년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자에 대한 규제와 미성년자의 노동권과 거래행위 등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항등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와 사법적 처우에 관해 법률적으로 개괄한다. 우선 청소년관련 명칭에 관한 용어 정의 및 비행청소년의 법률적 정의를 통해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비행소년과 불량행위, 지위비행을 일삼는 불량청소년 및 요보호아동 등 비행청소년 관련 법적 개념을 고찰한다. 비행청소년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처리로 나누어 각각에서 처리되는 특수한 과정 및 처분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문제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구분하여 개괄한다.

5)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규 고찰

청소년을 민사상·형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규를 고찰한다. 형사상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매체물,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퇴폐행위, 가혹행위, 호객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로부터의 보호, 불법고용 및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등 세가지로 범주화하여,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또한 민사상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법적 행위능력 무능력자에 대한 거래행위 등을 다루는 민법과 헌법 중 관련 조항을 검토한다.

특히, 법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최근에 발생한 청소년비행 관련 사례 및 법률기관

에 의뢰된 법률자문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특징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문제행동 및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문헌, 법교육과 법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며,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공식 통계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비행의 동향을 파악한다. 한편 국내외 법률 지침서를 검토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지침 개발에 시사점을 얻는다.

2) 조사 연구

청소년지도자 및 교사,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 1999년 7월 1일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집단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실시하였다. 조사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1999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하여 1999. 7. 5. ~ 7. 24일에 이루어졌다.

3) 법률해석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게 될 형법 관련 조항,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을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형벌조항 등은 형법의 관련조항을 검토하고,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및 비행청소년의 사법적 처우

등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의 법적 조치는 소년법을 중심으로 다루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다. 또한 청소년 불법고용 및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등 민사상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법 중 관련 조항을 검토한다. 또한 법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각종 법률 관련 기관에 의뢰된 법률자문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특징적인 판례 및 사례를 선별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 청소년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문헌연구 : 청소년문제행동 및 비행청소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청소년범죄 현황 및 처리현황에 관한 공식통계 분석
○ 청소년 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	- 조사연구 : 청소년지도자, 교사, 중·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내용: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실태, 청소년비행 관련 법적 처리절차 및 처우 등)
○ 형법상의 청소년비행 관련 범죄에 대한 이해	- 법률해석(형법 관련 조항) (내용: 형법상 폭력관련 범죄와 재산관련 범죄)
○ 비행청소년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 법률해석(소년법), 관련 판례 및 법률사례 수집 (내용: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및 사법적 처우)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제	- 법률해석(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및 관련 법률사례 수집 (내용: 청소년의 형사상·민사상 보호에 관한 법적 조항)

II.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문제행동 및 비행의 개념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내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고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사개념이면서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일탈’과 ‘범죄’의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탈(deviance)’은 모든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의미하여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 ‘범죄(crime)’를 포함하는 데 반해, 좁은 의미에서 일탈을 규정하게 되면 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를 제외한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지칭하게 된다. 한편 일탈과 범죄의 개념이 청소년의 행위에 적용될 때에는 ‘일탈’보다는 ‘청소년문제행동’ 또는 ‘청소년비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학문적 관례이다. 일탈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문제행동이나 청소년비행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지만,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는 행위인 지위비행(status offenses)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분명히 하고 어떤 행위들이 일탈로, 또는 청소년문제행동/청소년비행으로 규정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일탈과 범죄의 정의 및 범위

“유홍가 배회하기,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빈 집 들어가 물건 훔치기, 시험시간에 부정행위 하기, 친구 따돌리기, 본드 흡입하기, 오토바이 훔치기, 음란서적 구입하기, 술 취한 사람 뺨때기, 시비 걸어 싸움하기, 유흥업소 출입하기, 학교수업 빼먹기,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기, 형광색으로 머리 염색하기, 장난전화 걸기.....”

위의 행위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한번쯤은 해볼만한 행동들이다. 그러면 이들 행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일견 다양하게 보이는 이들 행위의 공통점은 한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되는 행위들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회는 그 속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종류의 행위는 자제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칙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기대들을 저버리게 되면(보다 정확히 말하면, 규칙위반행위가 발각되면) 부정적인 제재(negative sanctions)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칙·규범 위반행동을 사회학에서는 총칭해서 일탈(deviance, deviant behavior)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물론 형법을 위반한 범죄도 포함되며, 위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지만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의 행위도 포함된다.¹⁾

그러면 위에 열거한 (일탈)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이들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는 관습적·비

- 1) 한편 규칙위반행동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규범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사회통제(social control)라 한다. 사회통제의 수준 및 종류는 다양하다. 가장 강력하고 공식적인 사회통제는 법률에 외거한 규제이다. 주로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각 조직마다 규칙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와 보상도 사회통제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미디어에서 사회적 관습과 가치 및 전통, 신념들을 계속해서 주시시키는 것도 사회통제의 일환이다. 즉 사회통제란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keeps people in line)”(Bortner, 1988: 2)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규제되는 행위이고(예컨대, 거짓말하기, 친구따돌리기); 어떤 행위들은 학교규칙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이며(예컨대, 부정행위, 수업 빼먹기, 머리염색), 또 어떤 행위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컨대, 오토바이 훔치기, 음란서적 구입하기 등)들이다. 이러한 규칙의 차원간 차이는 이들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가져온다. 달리 말하자면 규칙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질책 등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지만,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발각되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정도이다. 또 학교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학칙에 따라 처벌받지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도나 강도, 본드흡입 등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학칙에 따른 처벌보다 강한 것이며, 말로 듣는 꾸중보다는 체벌의 강도가 강한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규범위반행위들은 그 규제(처벌)의 강도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둘째, 이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형광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교복을 몸에 꼭 맞게 줄여 입는 것 등은 좀 유별난 행동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가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강도나 살인, 절도나 약물복용 등은 행위자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심각하게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사회의 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규칙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피해는 반응의 심각성과 마찬가지로 행위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그 피해정도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나열할 수 있다.

셋째, 부정적 반응의 강도(예, 처벌, 또는 형벌의 경중)의 차이는 어떤 행위를 평가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데 이견이 별로 없는 반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다는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다. 머리를 형광색으로 염색하는 것, 가수의 이름을 부르다 실신하는 행동 따위는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불량 청소년”의 딱지처럼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 자신들에게는 용기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 눈치보지 않는 개성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다른 예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런 행위를 한 청소년들을 비난하지만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이 꼭 연령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행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행위들이 한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의 극단에는 어느 누가 보아도 나쁜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살인이나 방화, 강도, 사기, 청소년과의 윤락 등이 범죄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다. 이같이 어떤 행위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순서대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연속선을 기준으로 일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한 극단에는 부정적인 제재(처벌)의 강도가 매우 크고,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크며,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합의하는 소위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사회적으로 별로 부정적인 반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행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별로 피해가 없는 행위, 마지막으로 사회성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는 행위가 자리잡게 되며 이 양극단 사이에는 중간수준의 행위들이 놓여지게 되는 데, 이러한 규범위 반행위들은 네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Hagan, 1987:48-59).

첫째, 합의범죄(consensus crimes)라고 일컬을 수 있는 행위로 여기에 속하는 행위들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별 이의를 표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들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응(처벌이나 규제)이 매우 강하고 부정적이며 사회적·개인적인 피해가 상당히 큰 행

위유형으로 살인이나 강도, 강간, 유괴, 절도 등 전통적인 약탈 및 폭력범죄들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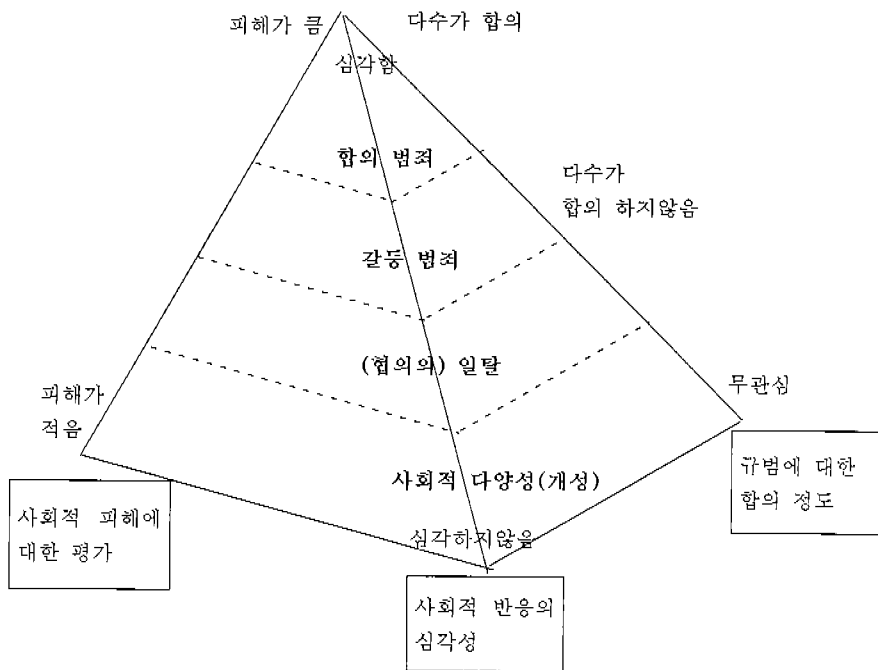
두번째 유형은 갈등범죄(conflict crimes)로 이 행위유형에 속하는 행위도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다. 사회적 피해의 정도는 합의범죄 다음으로 크며, 사회적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나 아니냐에 대해 논쟁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행위유형이다. 예를 들어, 인공유산, 안락사, 정치적 범죄 등은 집단에 따라 범죄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번째 유형은 좁은 의미에서의 일탈(social deviations)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행위들이다. 이 유형의 행위들은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 에티켓, 또는 조직의 규율, 학교의 학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만큼 강한 비난이나 제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내며, 어떤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 이외의 시설에 수용되거나 형사처벌이 아닌 형태의 처분을 받기도 한다. 사회적 피해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규범에 대한 합의정도도 범죄만큼 강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위비행(status offenses)에 속하는 행위들로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 음주, 흡연, 유흥업소 출입, 폐싸움, 불량서클 가입, 오토바이 폭주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 유형은 특별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형태를 포함하는 사회적 다양성(social diversions) 범주에 드는 행위들이다.²⁾ 남들보다 튀게 옷을 입거나, 머리에 형광색 염색을 하고 혀나 배꼽에 피어싱(piercing)을 하여 주위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정도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평범함에서 조금

2) 동성애는 해외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에 부부에게도 법적인 결혼이 인정된다거나 입양권과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관용도가 상당히 낮은 일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관용도가 낮고 부정적인 반응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벗어나기는 하지만 규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조금 지나치게 개성을 표현하는 행위들로 간주되고 평가되는 행위들이다.



출처: Hagan(1987: 50).

<그림 II-1> 일탈과 범죄의 유형

<그림 II-1>은 앞에서 열거한 네가지 행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피라미드형의 모양은 각 유형의 양적 크기를 나타내는데 한 사회에서 범죄라고 여겨지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개성이나 다양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가장 밑에 있는 사회적 다양성의 범주는 그 자체로는 일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탈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이며 따라서 그 기준을 벗어나는가 아닌가하는 판단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점에

서, 즉 일탈로 여겨지던 행위가 사회적 다양성의 차원으로 ‘정상화(normalize)’되기도 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각 유형사이의 점선은 각 유형이 고정적이 아니며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다. 60-70년대 장발남성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범죄 위반사범이 되었지만 요즈음은 위의 행동들을 (경)범죄라거나 일탈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잡고 있듯이 과거에는 일탈행위로 간주되던 행위가 현재에 와서는 정상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관습에 의해 일탈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을 일탈자로 또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은 많이 감소되었다. 또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나 자식들을 때리는 것이 혼육과 지도의 방편으로 묵인되어 일탈행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률로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³⁾ 이처럼 일탈행위란 어떤 행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인 ‘일탈’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광의의 일탈개념은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며,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형법위반행위인 범죄를 제외한 규칙위반행위, 규범위반행위를 일컫는 말

3) 이처럼 규범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기준(사회적 관습, 규범, 규칙, 법 등)이란 그 시대의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서의 사회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문제행동이나 청소년비행 및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제재가 모두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의 일탈, 문제행동, 비행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행위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이라고 규정되는 행위, 범죄라고 규정되는 행위는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누가 그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연령, 성) 달리 규정되고 다른 반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청소년문제행동·청소년비행의 개념 및 유형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설명할 때 ‘청소년비행’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일탈행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로 청소년문제행동이나 청소년비행을 규정할 때에는 범죄행위 뿐 아니라 그 외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분야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청소년비행분야의 연구를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김준호의 청소년비행 개념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범죄와 좁은 의미의 청소년비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좁은 의미의 청소년비행이란 성인이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위비행’을 말한다(김준호, 1996: 37-38). 이 정의에서 청소년비행을 청소년문제행동으로 바꾸어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즉 청소년비행이나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은 둘 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문제행동’과 ‘청소년비행’이라는 개념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에서 청소년비행 또는 청소년문제행동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행동유형의 공통성을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표 II-1>과 <표 II-2> 참조).

김준호와 박정선(1993)은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비행의 종류를 크게 다섯가지 행위군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지위 비행은 유흥장 출입, 관람불가 영화보기, 음주, 흡연, 음란서적 보기, 방황 등이며, 둘째, 폭력비행은 패싸움, 폭행, 흥기소지, 욕설이나 폭언, 뺨뺨기가 속한다고 보았으며, 셋째, 재산비행에는 물건훔치기를, 넷째, 약물비행에는 본드나 환각제 흡입을, 마지막으로 성비행에는 이성과의 성관계를 예로 들고 있다.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준호와 이동원(1996a)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주화를 하고 있다. 첫째, 지위비행에는 술집가서 술마시기, 비디오방 출입, 담배 피우기, 락카페 출입, 이성과의 성관계를 포함시켰으며, 둘째, 폭력비행에는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여 돈 뺏기, 패싸움, 오토바이 폭주, 남의 자동차 손상, 술 취한 사람 돈이나 지갑 뺏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본드나 가스 흡입, 환각약품 사용, 또 무단결석이나 가출등은 청소년의 도피적 비행으로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자전거 훔치기, 가게나 빈 집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등을 재산비행으로 분류하였다.⁴⁾

세부적인 비행행위의 종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비행분류는 김동일(1993), 김준호와 이동원(1996b)의 연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의 행위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와는 달리 김준호와 박해광(1994), 김준호와 김은경(1996)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비행(輕非行)과 중비행(重非行)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행위의 심각성이란 행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보다는 그 행위에

4) 방황이나 욕설 또는 폭언 등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 비행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누구의 어떤 기준에 의해 청소년들의 행위가 평가되고 규제되는 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 일반대중(general public)의 반응의 심각성(seriousness of social response)의 정도를 말한다.

<표 II-1> 청소년비행의 유형

	김준호 박정선 (1993)	김동일 (1993)	김준호 박해광 (1994)	김준호 김은경 (1996)	김준호 이동원 (1996a)	김준호 이동원 (1996b)
지위비행	유흥장출입 음주, 흡연	흡연 귀가시간어 기거 어른에게 반항	경비행 음주, 흡연 늦은귀가 술집출입	경비행 흡연 음주 금지장소출입 음란물접촉	소주방출입 컨닝 학교수업빼 먹기 가출 불량써클가입	술마시기 비디오방가기 흡연 성관계
폭력비행	패싸움 흥기소지 뺑뜨기 등	패싸움 공공기물파괴 폭력행위	중비행 등록금유용 폭행 패싸움 가출 환각제	중비행 성관계 약물사용 타인의 물건/ 돈 훔치기 타인의 물건/ 돈 뺏기 폭행	패싸움	폭행 돈뺏기 폭주족 자동차손상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물건훔치기	물건훔치기
약물비행	본드, 환각제	가스 본드			흡연 음주 본드, 가스 환각제	
성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음란전화 음란비디오 관람 성관계	강간 사창가출입 퇴폐이발관 출입		애인과 성관계 돈주고 성관계 강제적 성관계	
도피비행						본드/가스 환각약품 가출 무단결석

이들의 분류를 보면 분류의 기준은 다르지만 청소년비행이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패싸움, 돈 뺏기, 약물사용 등) 뿐 아니라 범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행위인 지위비행(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 본 청소년비행의 종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과 비행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문용린(1994)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재산형’ 문제행동에는 부모속임, 절도, 강도, 노름을 제시했으며, ‘폭력형’ 문제행동으로는 전화폭언, 흥기소지, 집단싸움, 폭행, 공공기물 파손을, ‘은둔적’ 문제행동으로는 음주, 흡연, 약물복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적’ 문제행동은 사창가 출입, 성관계, 음란물 소지, 음란비디오 시청과 부녀자 희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행위유형은 ‘비열한’ 문제행동이라는 범주로 시험시간 부정행위를 예로 들고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원(1992)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현장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한 지침서에는 문제행동의 유형으로 흡연·음주, 가출, 학교중퇴, 폭력, 성문제, 약물남용과 자살을 제시하고 있다.⁵⁾ 송정부(1992)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량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행위의 종류를 보면 문제행동과 같은 의미로 불량행위⁶⁾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불량행위의 범주를 보면, 먼저, ‘폭력적’ 불량행위에는 흥기소지 및 싸움이 있고, ‘성적’ 불량행위에는 부녀희롱, 불순

5) 이 지침서는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해 얘기하면서 ‘청소년문제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비행’이나 ‘청소년문제행동’이 ‘청소년 문제’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비행 또는 청소년문제행동과 동의어는 아니다. 청소년문제라고 할 때에는 청소년기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게되는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성에서부터 진학문제, 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치관의 갈등 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소비주체로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등 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이 사회에 주는 영향을 포함한다.

6) 불량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의 보도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불량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음주, 흡연, 싸움, 자기 및 타인의 도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사회학에서의 ‘지위비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송정부(1992)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 뿐 아니라 범죄행위도 불량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용어는 같지만 행위의 범위는 다르다.

이성교제, 남녀혼숙이 있으며, ‘풍속적’ 불량행위에는 음주, 흡연, 불건전 오락, 유흥장 출입이, ‘퇴행적’ 불량행위에는 가출, 불량교우, 불량집단 가입, 환각물질 소지가 포함된다. ‘금전적’ 불량행위에는 절도, 도박, 도벽, 금품탈취 등이 속한다.

<표 II-2> 문제행동의 유형

최윤진 (1990)	청소년개발원 (1992)	송정부 (1992)	문용린 (1994)	고성태 외 (1997)
흡연	학교중퇴	폭력적 문제행동 흥기소지 싸움	재산형 문제행동 부모속임, 절도 강도, 노름	흡연
음주	흡연	성적 문제행동 불순이성교제 남녀혼숙 부녀희롱	폭력형 문제행동 진화폭언, 폭행 흥기소지 집단싸움 공공기물파손	음주
약물남용	음주	풍속적 문제행동 음주, 흡연 불건전오락 유흥장출입	은둔적 문제행동 음주, 흡연 약물복용	유해업소출입
가출	가출			유해매체노출
폭력	성문제			약물남용
성폭행	약물남용			가출
자살	자살	퇴행적 문제행동 가출, 불량교우 불량집단가입 환각물질소지	성적 문제행동 사창가출입 성관계, 음란물소지	폭력
		금전적 문제행동 절도, 도박 금품탈취	비열한 문제행동 전닝	성비행

또 최윤진(1990)은 문제행동의 개념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흡연, 음주, 약물남용, 가출, 폭력, 성폭행, 자살, 음란물 구독 및 시청, 유해업소 출입을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고성혜 외(1997)도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윤진(1990)과 비슷한 행위를 문제행동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연구에 따라 이처럼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은 거의 같은 범주이다. 단지 하위범주(sub-category)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뿐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문제행동 또는 청소년비행은 청소년들이 범하는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를 받는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비행의 동향 및 처리현황

앞 절에서 청소년문제행동과 청소년비행이라는 개념이 청소년들의 특정 행위양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재와 처벌을 받는 행위들과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비행·문제행동의 실태에 대해 청소년이 행하는 '범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비행(청소년문제행동)의 실태를 알아봄에 있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비행의 규모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⁷⁾ 이 문제는 청

7) 청소년비행·문제행동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주 경미한 일탈에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경미하고 사소하거나, 또는 일회적인 행동에 그치는 비행의 실태는 그 양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 소위 지위비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주, 흡연이나 유흥장 출입, 남녀혼숙, 음란물 소지 및 시청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량행위"를 하는 '풍기사범'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단속의 양이 경찰의 재량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 행위 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가 실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이러한 지위비

소년비행 뿐 아니라 일반범죄의 실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면하는 문제인데, 그 이유는 숨은 비행(hidden delinquency)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를 가지고 비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식통계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비행의 양을 나타내기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각종 범죄에 대한 reporting의 차이, 범죄자에 대한 차별성과 선택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비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공식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피해자 조사(victimization survey)나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tudy)의 결과를 연구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어떤 방법이 더 정확하다거나 신뢰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Waegel, 1989; 김준호, 1989; 노성호, 1992).

아래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crimes known to the police)를 바탕으로 범죄의 양, 범죄의 종류, 범죄소년의 연령분포, 전과경도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 현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청소년비행 · 범죄 추세

<표 II-3>은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 3년간의 추세를 보면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97년에는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에는 다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논문들도 각기 다른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실태에 가까운지 확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표 II-3> 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단위: 명)

	1996년			1997년			1998년		
	총범죄	소년범죄	비율	총범죄	소년범죄	비율	총범죄	소년범죄	비율
형법	584,201	41,129	7.0	544,470	42,903	7.9	633,017	51,026	8.1
특별법	1,338,348	96,374	7.2	1,441,784	107,296	7.4	1,563,548	97,532	6.2
합계	1,922,549	137,503	7.2	1,986,254	150,199	7.6	2,196,565	148,558	6.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

이것을 형법과 특별법위반 범죄로 나누어 보면, 1996년도에는 형법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7%를 차지했으나 1997년에는 7.9%로 0.9% 증가하고 1998년도에는 8.1%를 차지하여 형법 범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격한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⁸⁾

한편 특별법 위반자중 청소년의 비율은 1996년에 7.2%였던 것이 1997년에는 7.6%로 약간 증가했다가 1998년에는 6.8%로 감소하였다.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범죄위반건수에 있어서는, 전체 범죄자나 청소년 범죄자 모두에게 있어 특별법 위반이 형법 위반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형법 위반자와 특별법 위반자로만 나누어 청소년 범죄를 말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형별 분포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8) 참고로 1998년에 미국의 전체 (체포된)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는 18%이며 강력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였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t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1999).

<표 II-4> 청소년 범죄 분류별 동향(단위: 명)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형법	소계	41,129(29.9)	42,903(28.6)	51,026(34.3)
	절도	29,936	31,357	37,981
	장물	663	657	669
	사기	2,361	2,285	3,263
	횡령	945	917	773
	살인	55	60	54
	강도	2,394	2,996	3,647
	방화	36	56	75
	간강	612	537	519
	폭행	500	505	524
	상해	1,332	1,377	1,453
	공갈	718	696	484
	과실치사상	56	51	33
	업무상과실치사상	32	18	19
	기타	1,489	1,391	1,532
특별법	소계	96,374(70.1)	107,296(71.4)	97,532(65.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45,962	52,763	48,526
총계		137,503	150,199	148,558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

청소년이 범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형법범 중에는 절도가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96년부터 3년간 총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범죄자중 절도죄를 위반한 비율은 '96년에 73%, '97년에도 73%였으며 98년도에 74%로 1% 증가하였다. 그 다음이 강도죄로 96년에 6%, 97년과 98년에는 형법위반 청소년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사기죄를 위반한 청소년도 강도죄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96년에 6%, 97년에 5%이며 98년에는 다시 6%가 되었다. 폭행과 상해는 유사한 성질의 범죄이며 다만 폭력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둘을 합해서 보아도 무방하다. 폭행·상해죄는 총 형법범죄 중 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형법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위반하는 범죄유형은 절도, 강도, 사기, 폭행·상해의 순이다. 또 특별법 위반 중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이 전체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6년에는 총 특별법 중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48%였으며, 97년에는 49%, 98년에는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다.

절도와 강도는 청소년들이 위반하는 형법범죄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전체 절도사건과 전체 강도사건의 50%정도가 청소년에 의해 범해진다는 점이다.

<표 II-5>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범죄자 비율

	절도	강도	강간	폭행·상해
1995년	55.3	51.5	11.1	3.9
1996년	56.8	46.4	10.6	4.3
1997년	56.8	47.8	9.6	4.6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표 II-5>는 대표적인 범죄유형별로 소년범죄자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전체 절도와 강도범죄의 과반수가 소년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간과 폭행·상해에서 차지하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절도와 강도가 청소년 범죄의 대표유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청소년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특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강도사건의 반이 청소년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은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의 좋은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특징으로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저연령화이다. 저연령화란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상을 말한다. <표 II-6>은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6>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범죄자인원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1996년	137,503(100)	2,660(1.9)	3,6084(26.3)	51,130(37.2)	47,629(34.6)
1997년	150,199(100)	2,096(1.4)	38,792(25.8)	57,624(38.4)	51,687(34.4)
1998년	148,558(100)	1,732(1.2)	33,141(22.3)	55,075(37.1)	58,610(39.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

지난 3년간의 연령별 분포의 추이를 보면 이 기간동안은 범죄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세미만의 비율은 그 비율이 미미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율이 미약하나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4-15세의 비율은 96년에 26%정도였던 것이 98년에는 22%로 4%정도 떨어졌으며 16-17세의 비율은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18-19세 청소년의 비율이 96년의 35%에서 98년에 38%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16세 이상(76.5%)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면(<표 II-7> 참조), 대다수가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중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불취학이나 초등학교 수준의 범죄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7> 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범죄자인원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1996년	137,503 (100)	166 (0.1)	2,698 (2.0)	44,233 (32.2)	76,119 (55.4)	7,234 (5.3)	7,053 (5.0)
1997년	150,199 (100)	171 (0.1)	2,624 (1.7)	47,287 (31.5)	84,987 (56.6)	8,852 (5.9)	6,278 (4.2)
1998년	148,558 (100)	211 (0.1)	2,506 (1.7)	44,513 (30.0)	83,409 (56.1)	10,590 (7.2)	7,329 (4.9)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

또한 대학교 수준의 교육정도를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96년의 5%에서 98년에 7%로 증가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전반적인 사회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범죄자의 교육수준도 함께 올라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의 전과별 분포는 <표 II-8>에 나와 있다. 지난 3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범죄자들 중 초범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많기는 하지만(65% 이상), 초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전과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데 전과 3범 이상의 비율은 97년에 7%이던 것이 98년에 9.4%로 2%이상 증가하였으며, 1범과 2범의 비율은 각각 1%씩 증가하였다.

<표 II-8> 청소년범죄자의 전과별 현황

	초범	전과				계
		소계	1범	2범	3범이상	
1996년	96,851 (70.4)	36,347 (26.4)	19,643 (14.3)	8,508 (6.2)	8,196 (6.0)	137,503 (100)
1997년	103,958 (69.2)	42,666 (28.4)	22,067 (14.7)	10,148 (6.8)	10,451 (7.0)	150,199
1998년	96,407 (64.9)	48,767 (32.8)	23,305 (15.7)	11,538 (7.8)	13,924 (9.4)	148,558 (100)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1999.

초범의 비율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해서 범죄인 구집단(criminal population)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전과범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형사사법기관, 특히 소년사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정과 선도”라는 이념이 달성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한국의 청소년 범죄는 16세 이상의 전과전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주로 절도나 특별법 중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수

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폭력성이 가장 강한 범죄 유형으로는 강도를 들 수 있는 데, 전체 강도범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폭력성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이다.

2) 청소년비행·범죄자 처리현황

앞에서는 청소년범죄의 현황을 개관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범죄자들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범죄소년의 경우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성인범과 같은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검사가 보기에 경미한 범죄라고 여겨지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표 II-9>는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상황이다. 일단 소년범죄자가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기소를 한다는 것은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이며, 불기소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지는데 죄가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이 그것이다.

우선 기소/불기소 여부를 보면 형법범죄자의 경우, 96년에는 63%, 97년과 98년에는 5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법범의 경우는 불기소 비율이 96년에는 50%, 97년에는 44%, 98년에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은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불기소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형법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구약식의 비율은 높지 않은데 반해, 특별법의 경우에는 구약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의 처리 과정 중 기소유예는 상당히 중요한 처분 종류이며, 기소유예가 불기소 중 차지하는 비

율이나 전체 처리 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도에 전체 형법위반 청소년이 51,026명인데 이중 23,453이 기소유예를 받아 46%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9> 청소년범죄자 처분결과

		기소				기타	불기소		총합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구속	불구속					
1996년	형법법	9,741 (23.7)	7,561 (18.4)	806 (2.0)	1,374 (3.3)	5,652 (13.7)	25,729 (62.6)	20,826 (50.6)	41,122 (100)
	특별법법	39,845 (41.3)	8,486 (8.8)	1,425 (1.5)	29,934 (31.1)	8,830 (9.2)	47,706 (49.5)	39,748 (41.2)	96,381 (100)
	합계	49,586 (36.1)	16,047 (11.7)	2,231 (1.6)	31,308 (22.8)	14,482 (10.5)	73,435 (53.4)	60,574 (44.1)	137,503 (100)
1997년	형법법	10,864 (25.3)	8,054 (18.7)	1,401 (3.3)	1,409 (3.3)	8,284 (19.3)	23,755 (55.4)	19,440 (45.3)	42,903 (100)
	특별법법	45,533 (42.4)	8,683 (8.1)	2,743 (2.5)	34,107 (31.8)	14,164 (13.2)	47,599 (44.4)	40,300 (37.6)	107,296 (100)
	합계	56,397 (37.5)	16,737 (1.1)	4,144 (2.8)	35,516 (23.6)	22,448 (14.9)	71,354 (47.6)	59,740 (39.8)	150,119 (100)
1998년	형법법	12,844 (25.2)	9,573 (18.8)	1,514 (3.0)	1,757 (3.4)	9,955 (19.5)	28,227 (55.3)	23,453 (46.0)	51,026 (100)
	특별법법	41,128 (42.2)	7,172 (7.4)	2,139 (2.2)	31,817 (32.6)	11,099 (11.4)	45,305 (46.4)	38,410 (39.4)	97,532 (100)
	합계	53,972 (36.3)	16,745 (11.3)	3,653 (2.5)	33,574 (22.5)	21,054 (14.2)	73,532 (49.5)	61,863 (41.6)	148,558 (100)

* 주: 기타항목은 소년보호송치와 가정보호송치를 합한 것임.

기소유예란의 팔호안의 피센티지는 총 합계에서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

한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개전의 가능성이 성인보다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지도위원들에 의해 교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제아래 선도보호를 조건으로 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막

으면서 범죄성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라고 부른다.

<표 II-10> 선도유예소년 죄명별 현황

	계	절도	폭력범	강도	강간	기타
1995년	11,551 (100)	5,957 (51.6)	4,003 (34.7)	241 (2.1)	40 (0.3)	1,310 (11.3)
1996년	11,062 (100)	5,637 (51.0)	3,959 (35.8)	177 (1.6)	26 (0.2)	1,263 (11.4)
1997년	8,653 (100)	4,177 (48.3)	3,416 (39.5)	145 (1.7)	10 (0.1)	905 (10.5)

출처: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199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주로 절도나 폭력의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절도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유예율은 95년에 52%였다가 조금씩 감소하여 97년에는 48%대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범의 경우에는 95년에 35%였던 것이 96년에는 36%, 97년에는 약 40%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강도나 강간의 경우는 그 죄질의 심각함에 비추어 선도유예가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보여 그 비율이 상당히 적다. 선도유예제도가 경미한 형법위반 청소년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표 II-11>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별 누년비교표

	1호처분	2호처분	3호처분	4호처분	5호처분	6호처분	7호처분	계
1996	27,271(83.4)	-	-	604(1.8)	82(0.3)	1,881(5.8)	1,154(3.5)	32,697 (100)
1997	33,504(84.5)	-	-	653(1.7)	43(0.1)	2,214(5.6)	1,145(2.9)	39,639 (100)
1998	33,139(84.3)	-	-	851(2.2)	10(0.0)	1,884(4.8)	1,197(3.0)	37,081 (100)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1999.

한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1호에서 7호까지 일곱가지 종류가 있다. 보호처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보고서의 “소년사건 처리과정”을 다루는 장에서 상세히 다루어 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고자 한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며(6개월), 2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6개월), 3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2년), 4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6개월), 5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에 위탁(6개월), 6호 처분은 소년원에의 단기송치(6개월), 7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부정기)를 말한다.

보호사건의 80% 이상이 1호 처분, 즉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조치를 받고 있다. 2호 처분과 3호 처분의 난이 비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2호와 3호 처분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호 처분과 함께 병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1, 2, 3호 처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처분이며,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8-1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호 처분과 5호 처분은 그 비율이 아주 적는데, 5호 처분은 거의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별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병원이나 요양소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소년사법에 있어 ‘치료’의 이념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으로는 이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충분한 시설이 부족하여 이러한 결정이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점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탐구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보호처분의 분포를 죄명별로 살펴본 결과가 <표 II-12>에 제시되어 있다. 일곱가지의 보호처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호자 감호하에 보호관찰이 병과되는 처분을 받고 있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6호나 7호 처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보호처분현황

	보호자(적당 한자)의 감호에 위탁	단기보호 관찰	보호관 찰	아동복지시설 기타소년보호 시설에 위탁	병원· 요양소에 위탁	단기소년 원송치	소년원 송치	계
상해·폭행	(1,120) 1,332	(676)	(444)	41		77	45	1,495
정조에 관한 죄	(341) 429	(175)	(166)	19		95	55	598
주거침입	(600) 701	(296)	(304)	18		24	18	761
절도	(8,738) 11,208	(4,795)	(3,943)	316	4	373	238	12,139
강도·강간	(895) 1,069	(422)	(473)	48		127	101	1,345
유해화확물질 관리법	(1,912) 2306	(985)	(927)	92	2	204	130	2,734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	(1,172) 1,419	(540)	(632)	34	2	164	101	1,720
폭력행위등처벌 에 관한 법률	(8,901) 10,877	(3,489)	(5,412)	203	1	518	401	12,000
합계	(26,431) 33,139	(12,719)	(13,712)	851	10	1,884	1,197	37,081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1999.

*주: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란의 ()내의 수는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병과된 인원수를, “단기보호관찰” 및 “보호관찰”란의 ()내의 수는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에 병과된 인원수를 각 나타내는 외서임.

결과적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리는 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보호처분 중 1호처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는 모두 청소년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격리시키기보다는 기존 사회체제내에 남아 있게 하면서 범죄성향이나 문제요인을 개선,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실제 이러한 방법들이 선도와 교정이라는 명분아래 청소년범죄자 처리의 주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호자 인계(1호 보호처분)라는 것이 처분의 효력을 실제 발휘하고 있는 지, 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 관련 법규에 관한 인지도 실태

1. 청소년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식

1) 조사개관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 1999년 7월 1일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청소년 자신이 얼마만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의 남녀 중고생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대상자 452명 중 중학생은 213명으로 47.1%이며 고등학생은 239명으로 52.9%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을 병행하였는데, 우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식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층화한 후 각각에 무작위로 표본의 수를 할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할당하였다.

조사방법은 집단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실시하거나 교사가 직접 지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1999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하여 1999. 7. 5. ~ 7. 24일에 이루어졌다.

(2) 조사내용

본 조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출입 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관련 사항,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주처벌, 원조교제 및 음란전화 등 유해행위 처벌 등 청소년

년보호법과 관련된 문항은 11개 문항이고, 폭력 및 절도에 관한 법적 처벌에 관한 문항은 2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의 3점척도이다. 나머지 3개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것으로 학교, 성별 및 학교교칙 위반경험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세부 설문영역 및 문항구성

설문영역	세부 설문영역 및 설문문항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1.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 2. 보호자 없이도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 5. 청소년은 밤 10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관련 사항	3. 19세미만 청소년은 만화방에 고용될 수 없다 6. 단란주점 등에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 7. 19세미만 청소년은 카페에 고용될 수 있다 12.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지만, 부모가 허락하면 취업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 주처벌	4.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면 처벌된다 9.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업주는 처벌된다
	청소년유해 행위 처벌	8. 어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 13. 음란전화를 거는 행위는 처벌된다
일반적 법적 처벌조항	폭력·절 도에 관한 법적처벌	10.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을 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11. 절도공모후 다른범인은 실행에 옮기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경별 변인	학교	15. 학교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성별	16. 성별 (①남 ②녀)
	학교교칙 위반여부	17. 학교교칙 위반여부 (①자주하는편 ②거의 하지 않는 편)

2) 청소년출입 금지업소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지각을 묻는 문항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452명중 63.5%(287명)이다. 1999년 7월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 청소년들의 비디오방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위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면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개정법에 대한 홍보가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머지 27.7%(125명)는 ‘모르겠다’고 하였고, 8.8%(40명)의 청소년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극소수의 청소년만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49.8	40.8	9.4	213 (100%)
고등학교	75.7	15.9	8.4	239 (100%)
성별				
남학생	60.6	28.3	11.2	251 (100%)
여학생	67.2	26.9	6.0	201 (100%)
교칙위반정도				
하는편	69.8	24.1	6.0	199 (100%)
하지않는편	58.3	30.6	11.1	533 (100%)
전체	63.5	27.7	8.8	452 (100%)

특히, 전체 고등학교 응답자 239명 중 75.7%(181명)가 보호자와 함께 하면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응답, 중학교 응답자 49.8%(전체 응답자 213명중 106명)보다 월등히 높아 고등학생의 인지도가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칙위반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교칙위반자의 69.8%가 “보호자와 함께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한 반면, 교칙위반을 하지 않는 학생은 58.3%였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디오방을 자주 출입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급학생과 교칙위반 학생이 비디오방 출입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호자 없이도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3.9%인데 반해, ‘모르겠다’가 9.3%, ‘그렇다’가 76.8%로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노래방에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표 III-3> 보호자 없이도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68.7	16.4	15.0	214 (100%)
고등학교	84.1	2.9	13.0	239 (100%)
성별				
남학생	69.4	14.7	15.9	201 (100%)
여학생	86.1	2.5	11.4	252 (100%)
교칙위반정도				
하는편	14.6	10.7	14.6	253 (100%)
하지않는편	79.4	7.6	13.1	199 (100%)
전체	76.8	9.3	13.9	453 (100%)

개정이전의 청소년보호법은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만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끼리의 노래방 출입이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고, 노래방을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법에서는 노래방을 성인용 노래방과 청소년 노래방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노래방에서는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

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성인용 노래방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여전히 금지된다.

변인별로는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 중 86.1%가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고 하여 남자청소년의 경우(6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84.1%)가 중학생의 경우(68.7%)보다 더 많이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밤 10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PC방 출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PC방 출입에 관한 비교적 높은 인지도는, 청소년들이 유달리 PC방에 대하여만 정확한 출입허용 기준을 갖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보고된 비디오방이나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PC방도 청소년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63.5%)과 보호자 없이도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76.8%)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밤 10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67.2%)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PC방 출입에 대한 인지도는 우연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해 주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빈번한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에 대하여 출입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 청소년과 업주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정확한 홍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 청소년고용 관련 사항

청소년고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자신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4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청소년들은 19세미만 청소년들도 만화방에 고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19세미만 청소년은 만화방에 고용될 수 없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25.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4.4%는 ‘모르겠다’(37.2%) 혹은 ‘아니다’(37.2%)라고 응답하여 법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19세미만 청소년은 만화방에 고용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24.2	38.6	37.2	215 (100%)
고등학교	26.8	36.0	37.2	239 (100%)
성별				
남학생	30.8	34.0	35.2	253 (100%)
여학생	18.9	41.3	39.8	201 (100%)
교칙위반정도				
하는편	25.5	31.0	43.5	200 (100%)
하지않는편	25.7	42.3	32.0	252 (100%)
전체	25.6	37.2	37.2	452 (100%)

변인별로는 성별, 교칙위반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남학생(30.8%)이 여학생(18.9%)보다, 교칙위반을 자주 하는 학생(43.5%)이 그렇지 않은 학생(32.0%)보다 더 많이 청소년은 만화방에 고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교칙위반을 자주 하는 학생이 만화방과 같은 업소에 출입 및 고용경

험이 많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사항에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단란주점 등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중 55.0%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33.5%)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11.5%)도 45%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청소년 호객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을 시사했다.

19세미만 청소년은 카페에 고용될 수 있다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중 34.8%이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4%,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8%로 나타나 법적 조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5> 19세미만 청소년은 카페에 고용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29.6	38.0	32.4	213 (100%)
고등학교	31.9	31.1	37.0	238 (100%)
성별				
남학생	33.9	33.1	33.1	251 (100%)
여학생	27.0	36.0	37.0	200 (100%)
교직위반정도				
하는편	32.3	35.4	32.3	198 (100%)
하지않는편	29.4	33.7	36.9	254 (100%)
전체	30.7	34.4	34.9	452 (100%)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는 부모의 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청소년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지만 부모가 허락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질문 한 결과, ‘아니다’라고 사실을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중 43.7%이며, 나머지 56.3%는 ‘모르겠다’(32.9%) 혹은 ‘그렇다’(23.4%)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교칙위반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칙위반을 하지 않는 학생(48.6%)이 자주 하는 학생(37.2%)보다 더 많이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취업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법적 조항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보고되었다.

<표 III-6>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지만, 부모가 허락하면 취업할 수 있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20.6	35.5	43.9	214 (100%)
고등학교	25.9	30.5	43.5	43.7 (100%)
성별				
남학생	25.8	31.7	42.5	252 (100%)
여학생	20.4	34.3	45.3	201 (100%)
교칙위반정도				
하는편	30.2	32.7	37.2	199 (100%)
하지않는편	18.2	33.2	48.6	253 (100%)
전체	23.5	33.0	43.6	452 (100%)

4)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주처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주 처벌에 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면 처벌된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65.8%가 ‘그렇다’라고 응답, 다수의 청소년들이

업주 처벌에 관한 조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34.7%의 청소년들은 ('모르겠다', 23.6%, '아니다', 10.7%)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전체 고등학생 응답자의 73.6%)의 경우가 중학생(전체 중학생 응답자의 56.9%) 보다 훨씬 더 많이 업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표 III-7>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면 처벌된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56.9	32.2	10.9	211 (100%)
고등학교	73.6	15.9	10.5	239 (100%)
성별				
남학생	64.7	23.7	11.6	249 (100%)
여학생	67.2	23.4	9.5	201 (100%)
교적위반정도				
하는편	62.9	24.4	12.7	197 (100%)
하지않는편	67.9	23.0	9.1	255 (100%)
전체	65.7	23.6	10.7	452 (100%)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처벌된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82.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소수의 17.9%의 청소년만이 '모르겠다'(10.2%)와 '아니다'(7.7%)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이번 설문조사의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에 관한 매스컴에서의 적극적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남학생 응답자의 86.6%가 술·담배 판매 업주는 처벌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78.5%)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8>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처벌된다

구분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체
학교급별				
중학교	80.8	10.8	8.5	213 (100%)
고등학교	83.3	9.6	7.1	239 (100%)
성별				
남학생	78.5	10.8	10.8	251 (100%)
여학생	86.6	9.5	4.0	201 (100%)
교칙위반정도				
하는편	77.9	12.6	9.5	199 (100%)
하지않는편	85.3	8.3	6.3	253 (100%)
전체	82.1	10.2	7.7	452 (100%)

5)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

원조교제 및 음란전화 등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에 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과반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교제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45.3%이며, ‘모르겠다’(32.1%), ‘아니다’(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칙위반을 자주 하는 학생(전체 응답자의 36.4%)이 그렇지 않은 학생(전체 응답자의 52.4%)보다 원조교제 청소년 처벌 조항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원조교제의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집단 학생의 법적인 인식수준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음란전화를 거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음란전화를 거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1.7%이며, ‘모르겠다’(27.2%), ‘아니다’(11.1%)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음란전화에 대한 범법행위 여부를 정확하게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고등학생(전체 고등학교 응답자의 69.0%)이 중학생(53.5%)보다, 그리고 여학생(전체 여자 응답자의 68.2%)이 남학생(56.6%)보다 음란전화에 대한 법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6) 일반 법률사항에 대한 인지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력 및 절도에 관한 법적 조항을 청소년 자신들은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행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을 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 14.5%이며, 과반수에 가까운 47.8%의 청소년이 ‘아니다’로, 37.7%의 청소년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혹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목격하는 폭력 현장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 대응폭력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청소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단지 공모만 하였다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절도공모후 다른 범인은 실행에 옮기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8%이며, ‘모르겠다’가 37.7%, ‘그렇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지식

1) 조사개관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 1999년 7월 1일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와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및 청소년상담자가 얼마만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의 교사와 청소년상담자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9>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4	42.8
	여	166	57.2
소속	학교	175	60.3
	수련시설	9	3.1
	청소년회관	43	14.8
	청소년단체	14	4.8
	사회복지시설	36	12.4
	기타	13	4.5
연령	20-30세	59	20.3
	31-40세	106	36.6
	41-50세	96	33.1
	51-65세	24	8.3
	무응답	5	1.7
전체		290	100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총 6개 항목으로, 청소년지도상의 애로사항, 청소년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 범법행위에 대한 인지도, 법적 처리사항에 대한 인지도 및 법적 지식 수준, 비행청소년의 법적처벌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 복지사범의 법적처벌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조사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1999. 7. 1

을 시점으로 하여 1999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 지도상의 애로사항

청소년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교사 및 청소년상담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고 칭함)의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신에게 문제해결 의지 부족 및 무기력감(71.1%)

둘째,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내 경제적, 심리적 자원 부족 및 대처능력 부족 (69.7%)

셋째,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질적인 지도시간 부족(65.2%)

넷째,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부족(61.7%)

다섯째,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60.2%)

여섯째, 청소년의 반항/회피적인 태도(58.3%)

일곱째, 비행청소년 처리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방법을 모름(50.0%)

<표 III-10> 청소년 지도상의 애로사항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반반	거 의 어 렵 지 않 음	전 혀 어 렵 지 않 음
청소년 자신에게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	25.2	45.9	23.4	5.2	0.3
청소년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 내 경제적, 심리적 자원 또는 능력 부족	17.6	52.1	23.8	5.9	0.7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실질적인 지도 시간 부족	25.9	39.3	23.8	8.3	2.8
청소년비행관련 법규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12.4	49.3	23.1	14.5	0.7
문제행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	17.3	42.9	30.1	8.3	1.4
청소년의 반항/ 회피적 태도	16.2	42.1	33.1	8.6	09.3
비행청소년 처리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방법을 모름	8.6	41.4	31.0	16.9	2.4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청소년 자신의 무기력감 및 반항적인 태도, 가족내 지원능력의 부족 및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 교사의 지도시간 부족 및 정보부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것은 청소년 자신에게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무기력감)인데, 전체 응답자의 25.2%가 ‘매우 어렵다’, 45.9%가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극소수의 5.5% (‘거의 어렵지 않다’:5.2%, ‘전혀 어렵지 않다’:0.3%)만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 나머지 23.4%는 ‘반반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외 교사들은 청소년의 반항/ 회피적인 태도로 인한 지도상의 어려움을 피력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6.2%가 ‘매우 어렵다’, 42.1%가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가족력의 결여에서 오는 지도상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내 경제적, 심리적 자원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69.7%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문제행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60.2%)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전가(교사 또는 학교의 책임이라고 항변) (47.0%)로 인한 지도상의 문제점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자신이나 가족 및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 교사자신 이나 학교 당국의 여건 미비로 인한 지도상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0%이상이 파중한 업무로 인한 실제적인 지도 시간 부족(65.2%)과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61.7%)을 지도상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했고, 비행청소년 처리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방법을 모른다(50.0%)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칙의 적용(48.6%) 및 문제행동 처리에 대한 학교당국의 경직된 태도(학교장 또는 교도교사와의 갈등 포함)(44.6%) 등으로 인한 지도상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지도자의 65.2%는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특정 비행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른다는 청소년지도자가 57.6%,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청소년지도자도 60.6%이며, 청소년관련 법률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지도자는 80.6%나 된다.

<표 III-11>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 반	거 의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청소년을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11.4	53.8	21.7	12.4	0.7
청소년의 특정 비행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른다.	9.3	48.3	26.9	14.1	1.4
법률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10.3	50.3	27.6	11.0	0.7
평소에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침서가 있었으면 하고 느끼곤 했다	33.4	47.2	12.1	6.6	0.7
최근 바뀐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17.2	46.9	14.8	4.8	1.0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64.1%는 최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19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비디오방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도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의 63.4%가 잘못 알고 있으며, 모른다는 경우도 20.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는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도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잘못 응답한 청소년지도자가 41.0%,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는 7.6%였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에 대해서는 다수의 청소년지도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37.2%나 되었다. 청소년들은 밤 10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비디오방이나 노래방과는 달리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청소년의 업소 고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9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카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3.8%는 19세미만 청소년은 카페에 고용될 수 있다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소수의 16.2%만이 잘못 알고 있거나(6.6%) 모르고 있는(9.6%)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방의 경우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고용될 수 있다고 잘못 알거나 또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39.1%로 3분의 1이상의 청소년지도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한편, 호객행위를 시키는 업주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청소년지도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의 업주가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면 처벌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3.8%이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5.2%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표 III-12>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	63.4	20.3	16.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아도, 청소년들끼리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다	41.0	7.6	51.4
청소년들은 PC방과 만화방에 출입할 수 없다	60.9	30.4	8.7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93.8	5.2	1.0
유해업소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청소년(떼끼)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62.8	21.7	15.5

4) 범법행위에 대한 인지도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족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범법행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으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했다. 자신의 형이나 부모 물건 절도의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도자는 전체 응답자의 20.8%에 불과 했으며 나머지 79.2%는 처벌받는다 (58.8%)고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겠다(20.4%)고 응답하였다.

형이나 부모가 동생 또는 아들을 은닉·신고 불이행한 경우도 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도자는 전체 응답자의 27.9%에 불과 했으며 나머지 72.1%는 ‘처벌받는다’(55.5%)고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겠다’(16.6%)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달리, 명백한 범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지도자는 전체 응답자의 47.1%이며, 나머지 52.9%는 ‘처벌받지 않는다 (23.8%)고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겠다’(29.1%)고 응답하였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을 한 경우도 명백한 범법행위로 처벌의 요건이 되지만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상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6%의 청소년지도자가 ‘처벌받는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20.8%이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13.5%에 달했다.

또한 절도 공모후 다른범인은 실행에 옮기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범법행위로서 처벌요건이 성립된다. 대다수의 청소년 지도자가 ‘처벌받는다’(73.4%)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26.6%의 청소년지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11.0%)고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겠다’(15.5%)고 응답하였다.

그 외 범인친구나 이웃사람의 범인을 은닉·신고 불이행한 경우 ‘처벌받는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는 82.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란전화 걸기의 경우와 유해업소 나체쇼에서의 행위자의 경우 각각 78.6%와 82.8%의 청소년지도자가 처벌받한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13> 범법행위에 대한 인지도

	처벌 받는다	잘 모르겠다	처벌받지 않는다
자신의 형이나 부모 물건 절도	58.8	20.4	20.8
형이나 부모가 범죄자인 동생을 은닉 또는 신고불이행한 경우	55.5	16.6	27.9
폭행은 하지 않고, 말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위	47.1	29.1	23.9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을 한 경우	65.6	13.5	20.8
절도공모 후, 다른 범인은 실행에 옮기고 자신은 행하지 않은 경우	73.4	15.5	11.0
범인 친구나 이웃 사람의 범인 은닉 또는 신고불이행한 경우	82.4	13.5	4.2
유해업소에서의 나체쇼 행위자	82.8	12.8	4.5

5) 법적 처리사항에 대한 인지도 및 법적 지식 수준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법적 처리사항이나 법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에 청소년지도자의 60%이상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처분의 종류(76.2%)

둘째, 보호처분 소년이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처리(68.5%)

셋째, 소년에 대한 법원의 재판절차(65.5%)

넷째, 소년 분류심사원의 역할(61.2%)

다섯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법적개념(61.0%)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법적인 처리과정에서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보호처분 제1호-제7호의 종류와 내용을 청소년지도자의 76.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4.1%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들도 32.1%나 되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도 청소년지도자의 68.5%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응답자의 45.0%가 ‘거의 모르고 있다’, 23.5%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4> 법적 처리사항에 대한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보호처분의 종류 (제1 - 제7호)	2.1	10.3	11.4	44.1	32.1
보호처분소년이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처리	3.8	13.1	14.5	45.0	23.5
소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절차	1.7	16.9	15.9	51.7	13.8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3.1	17.3	18.3	40.1	21.1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법적 개념	3.8	16.9	18.3	44.8	16.2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차이	6.9	16.3	22.8	35.6	18.3
교사의 체벌권(체벌 허용 정도 등)	6.9	37.2	26.7	26.4	2.8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	10.0	33.8	23.4	27.9	4.8

청소년지도자의 대다수는 소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절차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65.5%가 소년에 대한 법원의 재판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51.7%)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13.8%)고 응답하였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1%가 ‘거의 모르고 있다’, 21.1%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은 소년재판의 절차 및 처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외 법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법적개념(61.0%)**, **보호관찰의 법적개념과 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55.2%)** 및 **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의 차이(53.9%)** 등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관련 법률지침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교사의 체벌권이나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정도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과반수 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체벌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9.2%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44.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2.7%가 잘 모른다, 43.8%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도자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등장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지도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행한 절도 및 갈취, 폭행 및 기물파손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나, 그 밖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친 경우로 58.6%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무전취식 후 도주한 경우(46.4%), 가방에 칼등의 흉기를 소지한 경우(44.3%), 돈을 받고 어른과 교제한 경우(43.1%) 등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고 답해 청소년비행에 대한 법적 인식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절도 및 금품 갈취

청소년이 한 절도 및 갈취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거의 대부분인 56%정도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답해,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친 경우(58.6%), 동급생이나 후배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경우(55.9%)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 청소년의 절도 및 갈취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상습적으로 절도한 경우	8.3	48.1	12.5	27.3	3.8
타인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버린 경우	11.8	39.8	17.0	26.6	4.8
길거리에서 술취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친 경우	17.2	41.4	14.1	22.8	4.5
동급생이나 후배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13.8	42.1	15.9	25.2	3.1

(2) 폭행 및 기물파손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이 한 폭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적 처벌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으로 동급생이나 후배를 폭행한 경우에 대해 56.6%의 청소년지도자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학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가방에 칼

등의 흡기를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44.3%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집단으로 폭력 씨클을 구성한 경우(33.8%), 학교 유리창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32%)도 모른다는 응답이 높아 의외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16> 폭행 및 기물파손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집단으로 동급생이나 후배를 폭행한 경우	12.8	43.8	12.8	26.9	3.8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한 경우	14.8	39.0	15.5	27.9	2.8
가정에서 부모를 폭행한 경우	15.5	32.8	18.3	29.3	4.1
단속·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16.9	35.5	13.8	28.3	5.5
가방에 칼 등의 흡기를 소지한 경우	5.2	29.1	21.5	37.0	7.3
학교 유리창이나 기물을 파괴한 경우	10.3	34.5	23.1	27.9	4.1
집단으로 폭력씨클을 구성한 경우	9.3	35.2	21.7	30.0	3.8

(3) 단속 적발 및 도주

청소년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 또는 도주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스·본드 등의 금지약물을 흡인한 경우를 제외한 흡연·음주 및 오토바이 폭주, 무단가출·무단외박·심야배회, 호객행위 등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하여 35%정도만이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에게서 흔히 행해지는 문제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전취식 후 도주한 경우나 무단가출·무단외박·심야배회 하다가 단속된 경우, 유흥음식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는(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7> 단속적발 및 도주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흡연·음주하다가 단속된 경우	7.2	29.7	29.0	29.0	5.2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단속된 경우	7.9	30.3	24.1	31.7	6.2
무단가출·무단외박·심야매회하다가 단속 된 경우	5.9	29.3	26.2	32.4	6.2
가스·본드 등의 금지약물을 흡입한 경우	16.9	38.3	15.2	25.5	4.1
청소년이 보도업소를 차리고 유흥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소개한 경우	13.8	31.0	19.0	31.0	5.2
유흥음식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 경우	7.9	24.8	26.2	34.8	6.2
체포된 자가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경우	15.2	29.7	17.9	29.0	8.3
무전취식 후 도주한 경우	3.5	28.0	22.1	40.5	5.9

(4) 성범죄 및 성비행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성 관련 행동 중 강간이나 성추행 같은 성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반면, 돈을 받고 어른과 교제하는 속칭 원조교제나 불법낙태를 의뢰한 경우와 같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비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강간을 한 경우에 대해 51.4%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법적 처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성추행도 4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반면, 돈을 받고 어른과 교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불법낙태를 의뢰한 경우도 모른다는 응답율이 더 높았다.

결국 성문제 및 성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인지도가 낮아 청소년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법률 지침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II-18> 성범죄 및 성비행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13.4	32.1	19.0	29.7	5.9
강간을 한 경우	18.3	33.1	13.1	29.7	5.9
돈을 받고 어른과 교제한 경우	9.7	30.7	16.6	36.2	6.9
불법낙태를 의뢰한 경우	8.6	23.8	23.4	35.2	6.9

7) 청소년 복지사범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지도

성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관한 법적 규제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자들의 53%정도는 정확히 또는 대체로 법적 처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44%정도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법적 처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컴퓨터 통신 또는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유해행위의 강요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의 61.1%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55.2%),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53.1%),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52.1%)에 대한 법적 처벌도 대체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락상대방에 대한 신상공개가 쟁점화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보호법”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결과로 풀이된다.

<표 III-19>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자	15.9	45.2	11.4	21.7	5.9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자	12.1	41.0	16.6	24.1	6.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15.9	39.3	16.2	23.1	5.5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	13.1	39.0	17.9	24.1	5.9

(2) 유해업소 출입허용 및 불법고용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한 법적 규제 조항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자의 50%이상이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체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5.1%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도 51.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관한 법적 규제 조항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고용금지 업종에 19세미만 자를 고용한 업소	11.0	44.1	17.2	21.7	5.9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주	10.7	40.7	20.3	22.4	5.9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취업을 알선한 자	11.4	38.1	18.0	26.6	5.9

(3)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물 관련 조항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물과 관련한 법적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6%가

정확히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유해약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42%정도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요즘 사회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대부분이 그 법적 처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윤락행위 알선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목욕장면 등을 촬영한 자에 대하여 각각 38.9%, 37.2%가 그 법적 처벌을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II-21>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물 처벌에 대한 인지도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자	12.8	42.8	20.3	22.4	5.9
유해약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	12.0	30.0	19.0	30.0	9.0
포르노사진·음란비디오를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	11.4	37.7	18.7	25.6	7.3
컴퓨터 통신망 홈페이지에 윤락행위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자	10.3	29.7	21.0	31.7	7.2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목욕 장면등을 촬영한 자	11.0	32.4	19.3	28.6	8.6

3. 중·고등학교 법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1) 현행 중·고등학교 법교육 현황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그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조차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 강도, 절도를 비롯하여 성범죄, 마약, 도박으로까지 이어져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의 흉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의 법의

식 및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이며, 법에 대한 신뢰감도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강하여(류성욱, 1995:27),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법에 대한 무지 혹은 법적인 무력감 또는 법을 기피하려는 냉소주의적인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회내외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법의식과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법적 사고능력을 심어주지 못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 일반에 관한 내용과 헌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 6차 교육과정중 중·고등학교 법교육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표 III-22> 제6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중학교	사회1	법단원 없음
	사회2	법단원 없음
	사회3	(2) 민주정치와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제도와 선거, 정부의 구조와 기능) (4) 현대사회생활과 법질서 (개인생활과 법, 민주주의 확립과 법, 현대복지국가와 법)
고등학교	공동사회 (필수)	(5) 법생활의 문제와 해결 (법생활의 이해, 법과 시민생활, 현대사회의 법문제)
	정치 (선택)	(2) 시민생활과 법 (시민생활과 법이념, 법의 기본체제와 내용, 사회생활과 법질서) (4) 한국의 민주정치 (헌법의 기본이념과 민주주의, 입법부,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공공정책과 정책결정, 지방자치)

출처: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9) 교육부 장관은 1997년 12월 30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997-15호)을 확정 고시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가 중학교 1학년이 2001년 3월 1일,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2002년 3월 1일, 고등학교 2학년이 2003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이 2004년 3월 1일자이므로, 여기서는 6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중학교의 경우 1, 2학년에 걸쳐 법단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있는 사회3은 그 내용에 있어서 추상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경우는 법교육이 공통사회와 정치과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통사회의 총 7개 단원 중 “법생활의 문제와 해결” 1개 단원이, 정치과목은 총 5개 단원 중 “시민생활과 법”, “한국의 민주정치”로 2개 단원이 법교육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통사회가 필수과목인 반면, 정치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실업계 고교생의 전부, 그리고 일반고교생 중 정치과목을 선택하지 아니한 대다수 고교생들은 고교 3년 동안 헌법의 주요내용과 일상의 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민사·형사소송법 등 실정법에 대한 기초적인 법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보호법 혹은 소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2) 현행 법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중·고등학교 법교육은 법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일정한 연계성을 띄며 반복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과과정의 많은 부분이 기본 개념위주의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어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이상적이며, 실생활 문제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용적인 법지식의 습득을 통해 사회규범 의식을 고취시키고,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는 본래의 법교육 목표와는 달리, 학년과 난이도만 달리하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법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10)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심화 선택과목을 설정하여 그 중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설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결국 선택과목이라는 한계로 인해 중·고등학교 법교육의 보편화를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헌법분야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헌법 이외의 기타 법 분야의 내용은 실제생활과 거리가 먼 지극히 법 개념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교법을 분야의 지도 목표는 학문적 견지보다는 생활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헌법의 해설에 치우쳐, 오히려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범영역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 및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이라는 법률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헌법분야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범분야의 강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공법, 사법, 사회법의 주요내용과 개념이 단편적으로 많이 서술되어 있고, 교과서 속의 법적 개념이나 원리와 결부된 법적 사례의 활용기회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한 참고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판례 및 법적 사례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법교육이 대학입시를 표적으로 한 지식주입교육에 치우쳐 잡다한 법지식의 나열과 이를 암기하는 식의 수업으로 법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청소년시기의 법교육은 시민교육으로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 공동체의식과 다양성의 가치는 간과되고 더 많은 점수따기라는 경쟁만이 강조되고 있다(정성일, 1987).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양적인 증가와 낮아지는 범죄연령,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 양상 등은 우리 학교교육에서 가치판교육이 실패한 결과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행 법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화된 법학개론을 나열하는 방식의 법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개념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되, 실생활과 밀접한 사법분야 및 청소년관련 법분야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생활법률 지식의 습득을 통해 사회생활의 질서가 사회규범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준법정신을 배양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은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준다. 그러므로 법분야 전체의 비율 중 헌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 개념과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유발이 어려운 현행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헌법과 생활법률 비율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단계의 법교육은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법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법적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한 실제 법률사례 및 판례를 다룬다면, 법적용의 이해 및 흥미유발을 돕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법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목적을 가지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국가에 법이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국가에서 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법문화 혹은 국민의 법의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국가의 사회현상과 질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법교육은 그 나라 국민의 법의식 형성뿐만 아니라 가치관, 법에 대한 태도를 개인의 의식속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법교육의 의미는 법률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준법의 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여 정의 실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은 어떠한가? 그 동안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인, 강도, 조직

폭력, 국회위원의 뇌물 외유사건, 부정입학, 무질서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 등의 제반 사건들을 볼 때, 우리 국민의 법의식, 법생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법문화의 형성과 법의식의 향상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법교육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인은 법에 대한 관점을 계약적, 민법적 성격보다는 형사적, 징벌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은 법적인 사고능력하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획득하는 것이라는 측면보다, 주로 죄지은 사람을 벌주고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법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온 것인 일반적 경향임을 생각할 때, 체계적인 법교육은 잘못된 법의식과 법문화의 쇄신이라는 점에서도 특히 그 의의가 크다(류성욱, 1995:12). 결국 법교육은 실용적인 법지식의 습득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습과정임과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성격을 띤다.

또한,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없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근래와 같이 학교 내부에서 기물파괴, 학교폭력,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등 갖가지 유형의 문제상황이 발생하고, 학교 외부에서는 유해매체물 접근, 업소 출입, 약물남용 등 여러 유형의 청소년비행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교사나 현장의 지도자 등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법적으로 구속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가를 정확히 알아두는 일은 지도자로서의 자신감 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도자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와 청소년 지도자의 65.2%는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이 무엇인지 모르며, 57.6%는 청소년의 특정 비행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

한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현장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설문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이 청소년지도활동에 가장 필요한 지식으로 문제행동 관련법규와 처리절차라고 응답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관련법규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자신의 도덕성이나 법의식 수준이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성이 있음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덕성이나 법의식 수준이 낮아 미성숙한 사고를 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용린의 연구결과는 비행은 자아중심성이나 타율적 도덕성과 관련이 깊다는 Piaget의 법의식 발달론과 인습 이전 수준의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문용린 외, 1994:72). 이러한 결과는 법의식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비행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죄를 지으면,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무슨 행동을 죄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에 저촉되고,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론적으로도 처벌에 대한 인식은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고, 우발적이고, 현실도피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행억제에 관한 설문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결과에서도 처벌에 대한 지각이 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청소년비행 및 문제행동과 관련한 법률조항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IV. 형사법상 비행청소년 관련범죄의 이해¹¹⁾

1. 형사법의 개관

형사법은 일반법인 형법을 위시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범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처벌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을 규정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

11) 이 부분은 박영규(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등을 처벌하는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국제적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 영업외의 사행성 기계·기구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폭 개정되어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형법상의 일반범죄 중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폭력관련범죄와 재산관련범죄로 대별하여 그 의의와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별법상의 범죄는 그 죄명 정도만을 열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폭력과 폭행, 협박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가장 넓은 의미로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간접적인 유·무형력의 행사라는 점으로 이해하는 한 형법에는 이러한 폭력·폭행·협박 등의 직·간접적인 유·무형력을 행위요소 내지 수단으로 하는 범죄가 다수 있다.

우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중 생명, 신체와 자유에 대한 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요의 죄,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죄를 들 수 있고,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고,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로서 주거침입의 죄가 있고, 재산에 대한 죄로서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손괴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있고, 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로서 범죄단체조직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고,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서 성풍속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있고,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로서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서 공무원방해에 관한 죄가 있고,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등이 있다.

한편,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에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및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권리행사방해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재산죄를 그 침해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산죄는 재산죄의 객체, 영득의사의 필요 유무와 침해방법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물죄로서는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가 이에 해당하고 이득죄에는 배임죄가 이에 해당하며, 강도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해당한다. 둘째, 재산범죄의 성립에 영득(領得)의 의사(意思)가 필요한가에 따라 영득죄와 손괴죄로 구별하고 전자에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가 이에 속하고, 손괴죄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없는 범죄다. 셋째, 다시 영득죄를 그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奪取罪)와 편취죄(騙取罪)로 구별하여 전자에는 절도죄·강도죄·장물죄·횡령죄가 여기에 해당하고, 후자에는 사기죄·공갈죄가 이에 속한다는 구별이다.

2. 폭력관련 범죄

1) 살인죄

살인죄에는 그 형을 가중하는 존속살해죄와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및 자살교사·방조죄가 있다.

살해란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살인의 고의로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함)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死期)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살인죄의 형별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존속살인죄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주장과 위헌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嬰兒)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여중·고생들이 강간이나 혼숙 등으로 인하여 자기가 임신한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다가 화장실 등지에서 분만한 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사람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이것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다. 현행법상 자살은 처벌할 수 없으나,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사(敎唆)란 자살의 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자살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방조(幫助)란 이미 자살할 결의를 한 사람에게 그 자살행위를 돕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주로 이른바 정사(情死)의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두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죽을 의사로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그 중 한사람이 살아 남은

경우에 살아 남은 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되고, 사실은 자기는 죽을 맘이 없이 같이 죽겠다고 상대방을 속여서 자살케 하고 자기는 살아 남은 경우에는 자살교사·방조죄는 성립되지 않고 (위계에 의한)살인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나 자살의 교사·방조의 경우에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¹²⁾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의 예로서 처벌한다.

위에 든 모든 살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살인죄(존속살인 포함)와 위계 등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살인의 준비행위) 또는 음모(陰謀: 2인 이상이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합의하는 것)한 자도 동죄의 예비·음모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영아살해죄를 제외한 살인죄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람이 사망한 범죄로는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유기치사죄, 체포감금치사죄, 인질살해·치사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 교통방해치사죄, 음용수 혼독(混毒)치사죄, 내란목적 살인죄, 특수공무 방해 치사죄 등이 있다.

2) 상해·폭행죄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상해죄와

12) '위계(僞計)'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기망(欺罔)뿐만 아니라 유혹(誘惑)도 포함된다. '위력(威力)'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 한다.

폭행죄의 관계는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한 것임에 반해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신체적·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폭행미수는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이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고 있고 상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양자는 우리 형법상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상해죄에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및 상습상해죄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고 있으며, 폭행죄도 존속폭행죄, 상습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폭행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된다.

(2)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보호법익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신체의 완전성이다. 따라서 태아에 대한 상해나 자상행위(自傷行爲)는 제외된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장애 내지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을 뜻한다는 생리적 기능장애설(다수설로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일반적인 건강침해, 즉, 육체적·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그 증가를 말함)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어도 단순히 신체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즉 눈썹이나 모발 또는 손톱·발톱을 절단하는 행위도 이 학설에 의하면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됨) 및 절충설로서 생리적기능을 해하는 외에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도 상해에 포함된다고 하는 학설로 나뉘고 있다. 판례의 태도는 불분명하나 혈종양(血腫瘍), 피부표피의 박탈,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일으키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여성질구의 발적(發赤), 처녀막 열상(裂傷), 성병 감염, 실신상태에 빠뜨리는 것 등을 판례가 상해의 사례로 들고 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도 족함)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고의로써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 처벌받는다. 징계권의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즉,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는 책임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통설은 본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¹³⁾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상해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으로서 보통 치명상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불구란 예컨대, 실명, 혀를 깨물어 발음이 곤란한 경우, 고막파열로 인한 청력상실, 성기절단으로 성교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신체조직에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불치

13) 결과적 가중범이란 일정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상해의 의사로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 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며, 사망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과실범으로 경하게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상해죄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폭행의 의사로 상대방의 안면을 구타했는데 상대방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행위자는 단순한 폭행의 의사만 있을 뿐 살해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벌한다. 이렇듯 결과적 가중범은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의 범죄로서 이것을 진정(眞正)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고 각종 '치사(致死)죄(예,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낙태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 강간치상죄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부진정(不眞正)결과적 가중범이란 과실로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이 경우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임)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적가중범을 부득이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며 중상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는 난치의 질병이란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말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한 경우는 존속상해치사죄로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상습상해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내에 구치하는 것을 말함), 또는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재산형이나 그 액수가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존속폭행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죄(존속폭행죄 포함)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며,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는 상습폭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폭행’의 개념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最廣義)의 폭행은 그 대상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함한다(예컨대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에 있어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함). 둘째, 넓은 의미(廣義)의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

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작용하는 간접폭행도 여기에 포함된다(예컨대,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에 있어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함). 셋째, 좁은 의미(狹義)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예컨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함).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의미(最狹義)의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예컨대 강간죄, 강도죄 등이 여기에 해당함). 따라서 본죄(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협의(狹義)의 의미로 사용된 폭행을 말하며 폭행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야간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한 때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에 해당하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행한 때에는 동법 제3조에 해당하여 형을 대폭 가중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상습적으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 경우 상습범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과실치사상죄

과실(過失)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의 금고(禁錮: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지만 의무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름)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계속·반복의 의사(意思)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본죄의 업무는 그 성질상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위험성있는 것임을 요한다.

4) 낙태죄

부녀(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낙태죄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동의낙태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낙태치상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낙태치사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업무상 낙태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부동의(不同意)낙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업무상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태아’란 모체안에서 수태(受胎)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낙태'란 자연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모체외에 배출(排出)하거나 모체내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모체외에 배출한 이상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건 생존하였건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업무상 낙태죄는 위에 열거한 사람들만이 행위주체가 되고 모두 면허를 가진 자일 것이 필요하고 치과의사나 수의사가 낙태하더라도 여기의 업무상 낙태죄는 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용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유기·학대죄

본죄는 주로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이어서 오히려 청소년들은 그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으나, 청소년의 경우도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과 벌칙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노유(老幼: 노인과 유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유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重遺棄罪)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중(重)존속유기죄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직계존속이 치욕(恥辱)을 온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動機)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영아유기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학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한 자는 존속학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유기(영아유기, 학대)치사상죄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존속유기(존속학대)치사상죄로 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와 인도 받은 자는 아동혹사죄(酷使罪)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협박죄

(1)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체계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는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습으로 단

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협박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동법 제3조 3항). 형법상의 모든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협박의 의의 및 개념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나,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도 세가지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다. 첫째, 넓은 의미(廣義)의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묻지 않는다(예컨대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에 있어서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함). 둘째, 좁은 의미(狹義)의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예컨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함). 셋째, 가장 좁은 의미(最狹義)의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예컨대 강도죄,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함).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협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나 협박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행사와 같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통설은 고소의 의사여부를 기준으로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고소권의 행사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남용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7) 체포·감금죄

(1) 체포·감금죄의 의의

체포·감금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체포 또는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존속 체포 또는 감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중존속체포 또는 중존속감금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에 열거한 죄들을 범한 때에는 특수 체포 또는 특수감금죄로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며, 상습으로 체포·감금죄, 중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중존속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며, 위에 열거한 모든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을 포함하여 위에 열거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체포·감금등의 치상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체포·감금등의 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존속체포·감금등의 치상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존속체포·감금등의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체포·감금죄등의 모든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체포·감금의 행위와 행위객체

본죄의 행위로서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방법을 묻

지 않는다. 그리고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높은 곳에 올라간 자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거나, 목욕하는 부녀자의 옷을 감춰버려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차를 세워주지 않고 계속 질주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장소적 제한이 있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되나 감금의 수단·방법도 제한이 없다.

본죄의 행위객체는 자연인인 타인을 말하며 자연적·잠재적 의미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정신병자·명정자(酺酺者: 만취한 자)·수면자·불구자도 본죄의 객체가 되지만 유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8) 약취·유인죄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년자(즉,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약취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 반하여 유인은 기망(欺罔) 또는 유혹(誘惑)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약취와 유인이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행·협박·기망·유혹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야만 한다.

미수범은 처벌하나, 본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피인취자를 보호하고자 1995. 12. 29 신설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하고,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또한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고 있다.

(2) 영리·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죄

영리·추행·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남·녀, 성년·미성년자를 불문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간음’이라 함은 결혼의 목적이 아닌 성교를 의미하며, ‘영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 중에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피해자 등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¹⁴⁾로 되어 있다.

(3) 부녀(婦女)매매죄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의 ‘부녀’는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자를 불문한다. ‘매매’란 부녀를 물건과 같이 유상(有償)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

14) 친고죄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범죄의 피해자등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 간통죄 등과 같이 형법에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범죄를 기소하고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또는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까지 소추(訴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의 제기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만 체결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없는 때에는 미수(未遂)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종래 인격의 지각(知覺)이 있고 범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를 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폐기하고 성년의 지각능력있는 부녀자라도 인신매매법에 의해 윤락가에 팔린 경우 인신매매범에게 이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2. 1. 21, 91도 1042).

추업(醜業)이란 이른바 창기, 작부, 매음 등의 업무를 말한다. 범죄성립에 그 목적(추업)달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결혼목적약취·유인죄, 피약취·유인·매매 국외이송자 수수(授受)·은닉죄,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상습약취·유인죄 등이 있다.

9) 강요죄

(1) 강요죄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성질이 같으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까지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요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죄를 범한 자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강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강요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며, 폭행·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¹⁵⁾가 있어야 한다.

(2) 인질(人質)강요죄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포감금, 약취유인과 강요라는 두가지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자의 행위없이 강요한 때에는 강요죄만 성립되고 본죄인 인질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의 개념은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다.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된 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代償)으로 제3자를 강요하기 위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기수가 된다. 본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죽하며, 자의성(自意性) 내지 자발성(自發性)도 요하지 않는다.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인질상해·치상죄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인질살해·치사죄로서 인질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인질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강도살인죄 및 강도치사죄와 그 법정형이 동일하다.

- 15) 인과관계란 일반적으로 선행(先行)사실과 후행(後行)사실이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상 결과범(結果犯)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결과범은 구성요건이 충족되려면 실행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권총의 발사라는 실행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다수설 및 관례의 지배적인 견해가 상당인과관계설이다

10) 강간·추행죄

(1) 강간·추행죄의 의의와 구성체계

강간·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제추행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였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擬制)강간죄는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 강간(강제추행)치사상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는 그 객체와 침해방법이 다른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행위 주체는 남자이지만, 여자도 간접정범¹⁶⁾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 남자와 공동정범¹⁷⁾으로 본죄를 범할 수 있다. 본죄의

16) 타인을 하나의 범죄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간접정범이라 하는 데 형법 제34조 1항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 하는 자 또는 과실범(過失犯)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질하여 방화를 하게 하거나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든 주사를 놓게 하여 환자를 살해한 사람은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객체는 ‘부녀’로서, 남자는 객체가 될 수 없다. 부녀인 이상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묻지 않으며, 그 부녀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매춘부라도 상관없으나, 처(妻)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관례다.

폭행이란 부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설에 의하면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沒入)케 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협박과 간음이라는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간음이 종료되기 이전에 행하여져야 하며, 또 그것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므로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이며, 고소가 없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통설과 관례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했을 때는 특수강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하였다.

-
- 17)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正犯形態)를 공동정범이라 하며 공동의 범행계획 때문에 단지 일부의 범행만을 저지른 자도 전체범행에 대해 똑같이 정범으로 취급된다. 형법도 제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강도의 경우 甲은 칼로 은행원을 찌르고 乙은 돈만 훔쳐온 경우, 상호 공모하여 은행을 털기로 하였기 때문에 칼로 찌르지 않은 乙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3) 강제추행죄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醜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주체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여자도 본죄를 단독으로 혹은 공범으로 저지를 수가 있다. 본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남, 여, 기혼, 미혼, 연령의 고하를 묻지 않으나, 처(妻)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과 그 정도는 강간죄에 있어서 그것과 같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嫌惡)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불문한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강제추행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비친고죄이다.

(4)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본죄는 사람의 심신상실(心身喪失)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준강제추행의 객체는 남녀를 불문하나 준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한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고 심신미약상태까지 포함한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5) 미성년자 의제강간(擬制強姦) · 강제추행죄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상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본죄는 13세미만자의 방해없는 성적발전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 13세미만인 이상 성경험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나 행위자가,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한다. 사실은 13세미만의 자인데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13세이상의 자로 인식하고 행위했다면 이죄의 고의는 없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13세미만 자로 알고 행위했으나 사실은 13세 이상 자인 경우에는 불능범(不能犯)이다.¹⁸⁾ 본죄는 친고죄이며,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6) 강간등 상해·치상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죄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살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죄등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본죄들이 성립한다.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관상의 상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으로 인한 성병의 감염, 처녀막의 파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신체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유발한 경우도 여기의 상해와 치상의 개념에 들어간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간의 기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본죄가 성립한다.

18) 불능범이란 행위의 성질상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7조(不能犯)”에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문의 표제를 불능범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학자들은 이 규정을 불능미수범(不能未遂犯)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심신미약자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며 연령은 묻지 않는다. 위계(僞計)라 함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威力)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본죄도 친고죄이다.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고용·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자는 “피보호·감독 부녀간음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피구금부녀간음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憑藉)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淫行)의 상습(常習)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를 말한다. 연령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성년의 부녀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11) 주거침입죄

(1) 주거침입죄의 의의

본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람의 주

거,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주거침입죄 외에 퇴거불응죄와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주거·신체수색죄와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다. 본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단순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라 함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관리’란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족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관리·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부동산)을 말하고, ‘선박’은 크기를 묻지 않지만 적어도 주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임을 요한다. ‘점유하는 방실’은 건물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구획을 말하며, 사무실·연구실은 물론 호텔 또는 여관에 투숙중인 ‘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침입’이란 주거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본죄의 기수(既遂)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침입의 방법은 묻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보증인이 제3자의 침입을 방지하지 않는 경우는 부작위(不作爲)¹⁹⁾에 의한 침입이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 침입이므로 주거권자의 동의하에 들어간 경우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거에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주거권을 가지므로 남편의 부재중에 처와 간통하기 위하

19) 사람의 행위중 적극적 거동(무엇을 행하는 것)을 작위(作爲)라 하고 소극적 거동(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不作爲)라 한다. 부작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을 실현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하고, 이에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여 처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한다. 공중(公衆)에 개방되어 있는 백화점·관광서의 청사·역·은행·식당 등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관례는 본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3)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²⁰⁾이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퇴거요구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고 함은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

(4) 특수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의 개념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수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진정부작위범이란 처음부터 부작위의 형식으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다중불해산죄에 있어서 해산하지 않은 부작위와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퇴거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현실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이다. 예컨대, 살인죄는 작위범인데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시켜 살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도 한다.

3. 재산관련 범죄

1) 절도죄

(1) 단순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절도는 본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재물’(財物)이란 유체물(有體物), 관리가능한 동력(動力) 내지는 자연력을 말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형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는 있어야 한다. 예컨대, 애인의 사진과 같이 교환가치는 없지만 주관적인 가치는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백지위임장과 같은 것도 타인의 손에 들어가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소극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재물이다. ‘점유’라 함은 보통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형법상의 점유개념은 민법상의 점유개념보다 한층 현실적, 사실적인 개념이므로 민법상의 간접점유(間接占有)²¹⁾나 점유개정(占有改定)²²⁾, 점유의 승계나 상속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인이 재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점유자를 배제하여 그 재물을 영득하면

21) 점유자와 물건사이에 타인의 개재(介在)없이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직접점유라 하고,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媒介)로 하여 점유하는 것을 간접점유라고 한다. 예컨대, 임차인(賃借人)의 점유는 직접점유이고 임대인(賃貸人)의 그것은 간접점유이다.

22) 매도인(賣渡人)이 목적물을 매수인(買受人)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賃借)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讓渡人)이 양수인(讓受人)의 점유매개자(占有媒介者)가 되어서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引渡)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을 말한다. 한번 양수인(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빌려오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의적 방법으로서 양도담보의 경우에 실익(實益)이 많다.

절도죄가 성립한다. 점원(店員)과 주인처럼 주종의 관계에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주인의 점유만 인정되므로 점원이 그 물건을 절취하면 점원은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된다. '절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거나 침해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때이다. 판례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물건에의 접근행위 또는 목적물을 몰색(物色)하는 행위가 있을 때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절도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접촉설(接觸說), 취득설(取得說), 이전설(移轉說), 은닉설(隱匿說)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재물을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취득설을 취하고 있다.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절도의 고의 외에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이것을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라고 하는데,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본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심리학적 해석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야간이란 일몰후 일출전(천문학적 해석)까지를 말한다고 한다. 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도의 의사로 사람의 주거등에 침입한 때이다.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함을 요하지 않고, 주거침입이 기수인가 미수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본죄는 재물의 절취에 의하여 기수가 된다.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어느 한 쪽이 야간이면 족하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牆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은 처벌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상습특수절도죄의 경우는 본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란 권한없는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물을 의미하며, 실행의 착수시기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이다.

1995. 12. 2 국회를 통과하여 1996. 7. 1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이에 대한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본죄는 자동차의 불법사용이 예상되어 신설된 범죄로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소유권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3)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형법 제344조는 “친족간의 범행”이란 표제하에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제328조를 보면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에서는 “전항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이렇게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강도죄와 손괴죄이외의 재산죄에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규정의 법적 성질은 인적 처벌조각사유(人的 處罰阻却事由)라는 것이 통설인데,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기 않는다는 견해이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나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행위자와 소유자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 경우 친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거친족이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친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친족상도례는 수인의 공범에도 적용되나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2) 강도죄

(1) 단순 강도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強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강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을 처벌한다.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강도죄의 경우는 본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 재물뿐만 아니라(재물강취죄) 재산상의 이익(강도이득죄)도 객체로 한다는 점,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이나, 폭행·협박을 범행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자유 등 인격적 이익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불문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내용,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여기의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협박의 그것으로서 사람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강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으로서 폭행·협박과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폭행·협박을 가하였으나 상대방이 외포심(畏怖心)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정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미수범이 될 뿐이다.

(2) 강도죄의 범죄유형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강도죄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奪還)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準強盜罪)로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본죄는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인질강도죄(人質強盜罪)는 사람을 체포·감금·악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에 한하지 않으며, 석방의 대상(代償)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살인·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도살인의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상해·치상죄와 강도살인·치사죄의 강도는 단순강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도범을 말하며 그 기수, 미수도 불문한다. 강도의 고의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재물을 영득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의 주체인 강도도 모든 형태의 강도범을 말하며, 그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본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간범인이 강도한 때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행해졌으면 되며 그것이 재물의 강취전인가, 후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경우 미수란 강간의 미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상강도죄란 다중(多衆)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해상강도상해·치상죄는 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치상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는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상습강도죄, 상습특수강도죄, 상습인질강도죄, 상습해상강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기죄

(1) 단순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편취(騙取: 상대방의 착오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을 뜻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고, 둘째, 피기망자의 착오와, 셋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넷째,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을 것과, 다섯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판례는 이 요건 부정).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행위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기망의 수단 방법은 제한이 없다. 기망의 정도는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상거래상 허용되는 거짓말), 적어도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기망행위와 착오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절도죄나 강도죄와 구별된다.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나 수인 또는 부작위를 말하며 순수한 사실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처분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 그것이 유효하건 무효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든 불문한다. 또한 처분행위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다.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하

여야 하지만 처분행위자가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망행위와 착오사이에 있어서와 같이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사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없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995. 12. 29 신설한 범죄이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식이 없고 사려가 부족한 것을 뜻함)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身障礙)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년자를 말하며, 심신장애란 재산상의 거래능력에 관한 정신기능의 장애를 말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처벌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동설비의 사회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 12. 29 신설한 범죄이다.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궁박한 상태란 반드시 경제적 곤궁상태에 한정하지 않으며 생명이나 명예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인 곤궁상태도 포함한다.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란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상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이익을 말한다. 기타 상습사기, 상습준사기, 상습부당이득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4) 공갈죄

사람을 공갈(恐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瑕疵)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사기죄와 본질적으로 같으나 그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사기죄는 기망(欺罔:속임수)을 수단으로 하고 본죄는 공갈(恐喝: 겁)을 수단으로 한다. 보호법익은 재산권이 주된 것이고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는 부차적인 것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畏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공갈자는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될 것도 필요하지 않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압적인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인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통고하는 해악의 내용은 불문한다. 해악의 통고방법도 마찬가지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공갈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함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구조와 같다. 처분행위는 작위(作爲)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 또는 묵인으로 족하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외포심을 일으켜 상대방이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재물을 직접탈취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처분행위와 공갈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피공갈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여야 한다. 권리행사와 공갈죄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공갈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가는 그 수단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인가 아닌가라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상습공갈죄의 경우는 공갈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5) 기타 형법상 재산범죄

위에 서술한 범죄 외에도 횡령죄와 배임죄, 장물죄와 손괴죄가 있으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행사방해죄등이 있으나 주로 사업가들이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적용되는 죄라고 생각되므로 상론(詳論)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장물죄의 경우는 재산범죄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한 재물을 전전유통(轉轉流通)시켜 피해자의 사법상 추구 또는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그 기본적 구성요건만 열거하기로 한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장물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의 의미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존하는 인간은 모종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청소년들의 행동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 국가에 큰 해악이 되는 행동이라면 미연에 그러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지도·교양을 실시하고, 교정과 순화를 시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 본인은 물론 모두에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형사법상 어떠한 법률적 평가를 받게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률내용을 미리 알고 있음으로써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친구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한사람이 잘못될 경우 모두가 다 잘못될 수도 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경우는 친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례로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문제는 친구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권유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어느 한 친구의 단호한 거부와 중단의 결의가 있으면 그 친화력으로 다른 친구들도 쉽사리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친구들이 상대방 청소년들과 꽤싸움

을 벌이고 있을 때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공범이론에 의하면 친구들이 싸움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할 때 상호 의사소통이 있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비록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변명해도 결국은 그 범죄의 공범으로써 처벌되고 있는 것이 상례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에 가담하는 형태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결코 안되며, 어떻게 하든지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용기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법적인 처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범죄행위로 까지 나갔거나 그에 가담했다면 그러한 범죄의 완성에서 속히 탈출해야만 한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하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죄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법상 중지범(中止未遂犯)으로 인정하여 필요적으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상의 특례(선도조건부 또는 단순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등)도 있으므로 자수나 자복(自服)²³⁾을 속히 하면서 비행을 뉘우치고 개전(改悛)의 정(情)이 뚜렷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사법적인 절차에서 손쉽게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23) 자수란 범죄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구형법 제24조는 자수는 발각전(發覺前)이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을 두었으나 현행 형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체포전이면 지명수배 후라도 자수라 할 수 있다는 것이 관례다. 자수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自白)과 구별되며, 자복(自服)이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범죄(또는 반의사불벌죄라고도 함)에서 범죄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므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되나 그 법적 효과는 자수와 동일하여 ‘준 자수’라고도 한다. 자수나 자복의 시기는 범죄사실의 발견전후를 불문하나,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임) 이들의 성질상 소송단계 이전이어야 한다. 자수와 자복은 이를 행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V. 비행청소년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1.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

청소년의 명칭은 법률에 따라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아동”이라는 용어가 각기 사용되고 있고 연령층도 각기 다르다. 어떤 법률에서는 용어를 규정하지 않고 나이만 규정해 놓은 것도 있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령을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년’이라는 명칭은 유일하게 소년법에서 사용하고 있고 연령은 ‘20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이라는 명칭은 아동복지법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그 연령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관한법률에서는 ‘연소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라는 명칭은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됨). 다만, 민법에서 만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만20세미만 자’가 ‘미성년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진흥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명칭은 규정하지 않은 채 각각 18세미만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출입제한 연령을 ‘18세’ ‘20세미만 자’로 달리 하고 있다.

참고로 형법에는 “14세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행위

를 한 때의 연령이 만14세미만(만13세까지)이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률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연령이 다른 것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예: 청소년기본법), 유해매체물의 유통과 유해업소의 출입제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예: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음반및비디오물등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 등),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예: 아동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V-1> 현행법률의 청소년의 명칭 및 연령의 정의

법률상명칭	연령	규정법률	비고
청소년	19세미만	- 청소년보호법	연령정의 없이 '청소년' 명칭만 사용함.
	9세~24세	- 청소년기본법	
	-	- 방송법 - 종합유선방송법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 법률 - 육의광고물등관리법	
소년	20세미만	- 소년법	'14세미만 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행위를 행해도 범죄가 되지 않음.
아동	18세미만	- 아동복지법	
연소자	18세미만	- 영화진흥법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연령정의 없이 '연소자' 명칭만 사용함.
	-	- 공연법	
미성년자	-	- 공중위생법 - 식품위생법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연령정의 없이 '미성년자' 명칭만 사용함. 민법의 성년(만20세)을 반대해석하여 미성년자는 20세미만 자가 됨.
-	19세미만	- 국민건강진흥법	명칭규정 없이 연령만 규정함.
	18세미만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청소년 미성년자	18세 20세미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함.

1) 비행소년

(1) 정의

‘비행소년’이란 비행(나쁜 행동)을 저지른 소년이라는 뜻이지만, 법률적으로는 ① 범죄소년, ② 촉법소년, ③ 우범소년의 세가지를 가르켜 ‘비행소년’이라고 지칭한다(소년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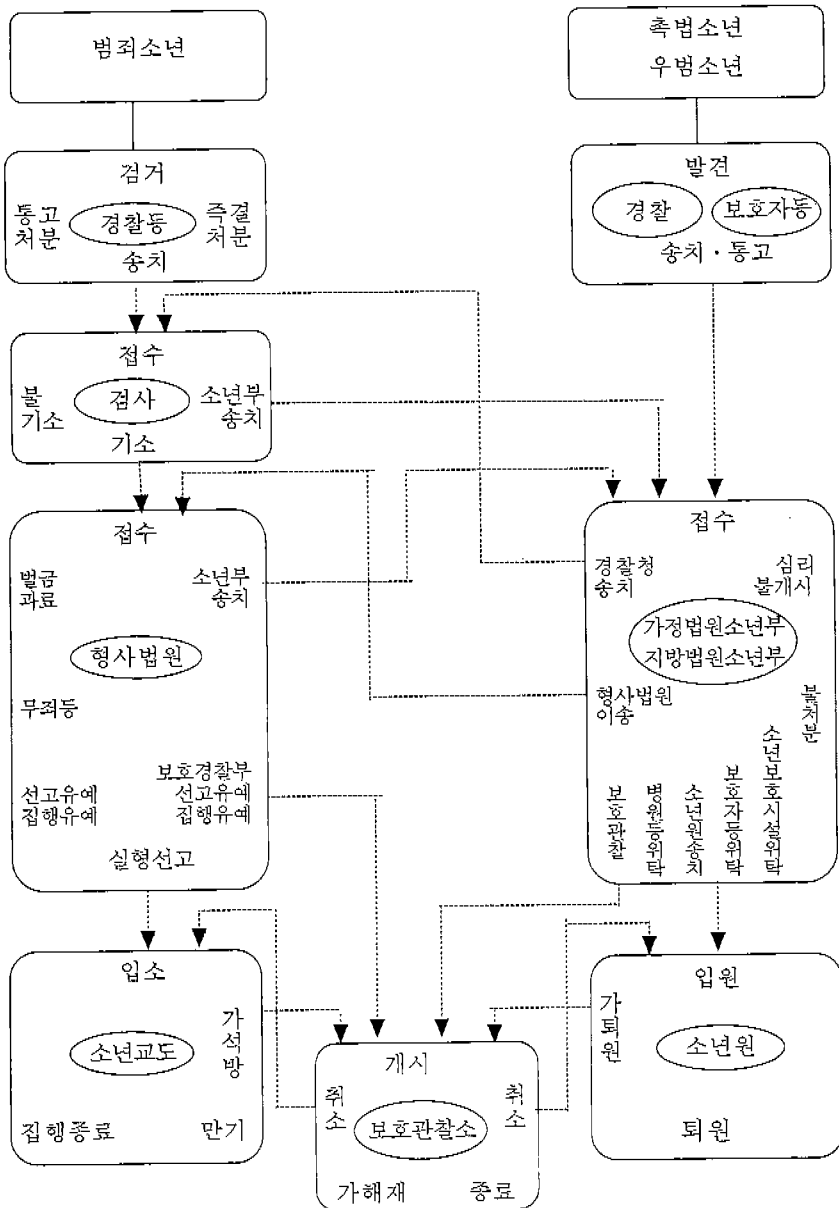
<표 V-2> 비행소년의 법률적 정의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됨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은 지지 않음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함 3.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음

비행소년은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은 성장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두번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년은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년을 선도하고 보호자에게 조언하여 비행성향이 초기단계에서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이나 법원에 불려다니게 되면 열등감과 자아의식으로 인생을 포기하여 진정한 범죄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비행소년을 ‘진성(眞性) 비행소년’과 ‘가성(假性) 비행소년’으로 구별하여, 비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한때의 실수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용서해 주면 다시는 그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성 비행소년에게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

(2) 비행소년의 처리에 대한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비행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가지를 총칭한다.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절차에 대해서는 3절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윤곽만을 개괄하기로 한다.



출처: 법무연구원(1996). 범죄백서. pp.240.

[그림 V-1] 비행소년의 처리과정

먼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일반적으로 ‘소년법원’이라고 함)가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할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며(소년법 제4조 2항),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소년법 제4조 3항).

그렇지만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이 행한 행위는 그것이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형사책임연령이 14세미만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밖에 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제재는 물론 처분도 가할 수 없다. 또한 우범소년도 18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사건은 무조건 소년법원으로 송치해야 하지만, 18세미만의 우범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거나 요보호아동으로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우범사건으로서 정상이 가깝고 소년 자신보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상이 무겁고 도주습관이 있으며 소년 자신에게 책임이 강할 때에는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14세미만의 우범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고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으로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만, 14세미만의 우범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소년과 동등한 조치가 부과될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우범소년과 약간 절차가 다르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의 형사절차에서 성인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은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소년의 행위를 판단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1항), 형사법원도 검찰

이 기소한 소년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소년법 제50조)이 다르다.

소년법원은 검찰청 검사나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범죄소년을 송치받거나 경찰 등으로부터 촉범소년, 우범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받으면, 그 소년에 대해서 조사·심리를 한다. 그 결과 범행동기와 죄질이 급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며(소년법 제49조 2항: 이것을 법률용어로 “역송”(逆送)이라고 한다), 소년은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은 만20세로 ‘성인’이 되며, 그 순간부터 소년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성인으로 취급된다.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20세가 되면 소년사건으로서의 취급을 중단하고 성인사건으로 취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년법원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조사·심리하여 본인이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되면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51조).

(3) 우범소년의 구속

범죄소년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소년이나 학생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하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44조, 제46조).

한편, 우범사건은 범죄소년과는 달리 체포나 구속 등의 수단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송치할 경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서류에 의한 송치로 제한되며 소년의 신병을 구속한 채 송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년을 긴급히 보호하고 보도(補導)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 ① 소년에 문제가 있고 흉포성이 강하여 반항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긴급히 신병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부랑습관이 있고 자주 가출하여 가정에 붙어있지 못하는 경우
- ③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불순한 이성교제를 반복하여 문제성이 있는 경우
- ④ 학대·혹사 등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소년의 복지상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처럼 우범소년에 대한 신병의 구속은 형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사건처럼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불량청소년

(1) 불량청소년의 정의

불량청소년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이나, 법률적으로는 ‘불량행위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불량행위소년은 정식으로 관계기관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행위를 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그 행동을 제지하고 경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을 ‘보도활동(補導活動)’이라고 하는데, 결국 범죄가 되는 비행소년과는 달리, 불량행위소년은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과연 어떤 행위가 불량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불량행위라 하면 음주, 흡연, 싸움,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된 불량행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음주: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음주를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음주를 한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다. 때문에 경

찰이 음주행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불량행위’로서 어떤 형태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음주행위를 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청소년이 소지하고 있는 술은 임의로 폐기하게 하거나 값비싼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한다.

○ 흡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19세미만의 청소년은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이 흡연을 한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할 수는 없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 약물남용: 본드와 같은 환각물질, 최면제나 진통제 등의 의약품 등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본래의 목적·용도에서 벗어나 흡입하거나 복용, 남용하는 행위

○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칼, 나무칼, 철봉 기타 흉기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난폭행위·싸움: 타인에 대하여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 시비를 걸거나 그 이상의 행위를 하여 방치를 하면 폭행, 상해 등의 비행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물건을 빼앗는 행위: 공갈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품을 빼앗거나 빌리는 행위

○ 심야배회: 정당한 이유 없이 심야에 집박을 배회하는 행위

○ 가출·무단외박: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여관, 친구집 등에 외박하는 행위

○ 불순이성교제: 불순한 성교를 하거나 그 목적으로 불건전한 교유를 하는 행위

○ 금품반출: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택에서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

(2) 불량청소년에 대한 조치

불량행위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관계 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리하여 종결하는데, 경찰이 취하는 조치에는 다음 3가지 종류가 있다.

① 현장에서의 조치

행위가 단순하고 불량성이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의를 주거나 조언하는 것으로 그친다.

② 연락조치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가정에 연락을 하고, 학교나 직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학교와 직장에 연락을 취한다.

③ 신병인도

보호자에게 청소년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 비행방지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불량행위소년은 특히 이 신병인도조치가 필요하다.

- 가출청소년
- 자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
- 음주를 하여 보행이 곤란한 청소년, 현재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
- 무단외박, 심야배회, 불순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
- 집에서 다액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청소년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그리고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는 시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교호시설(敎護施設)’이라고 하는데, 불량행위소년으로서 인도 받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교호시설에 입소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3) 요보호아동

(1) 정의

요보호아동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라는 뜻으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혹사를 당하고 방임된 소년 등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아이들이 요보호아동에 해당한다.

① 보호자가 없는 아동

현재 감독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고아,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은 아동, 보호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장기적으로 교도소에 입소중인 아동, 가출아동, 불량아동

② 보호자에게 감독·보호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방임되고 있는 아동, 보호자의 근로조건이나 질병 등으로 필요한 감독·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보호자의 슬하에서는 충분한 감독·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맏아·농아아동·허약아동·지체부자유 아동, 기타 불량행위를 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불량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아동

(2) 요보호아동의 처리

경찰은 물론 관계공무원이나 자격을 가진 아동복지지도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다(아동복지법 제11조).

①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②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③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게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④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 ⑤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⑥ 성격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선도기관에 의뢰하는 것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가출아동·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아동복지법 제12조), 이 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아동의 주소·거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1) 경찰에서의 처리

(1) 소년경찰의 임무

소년비행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은 일반 경찰과는 다르다. 비행소년은 심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경찰에서는 비행소년을 취급하는 경찰관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소년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둔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비행소년을 취급하는 경찰의 활동을 ‘소년경찰’(少年警察)이라고 하고 그러한 부서를 ‘소년계’(少年係)라고 한다. 소년경찰은 원칙적으로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21조).

소년경찰의 활동목적은 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소년복지의 증진에 노력하는 데에 있다. 소년경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의 지도 및 보호
- ② 청소년의 선도대책 업무
- ③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
- ④ 소년보도(상담카드) 및 상담(보도표)
- ⑤ 소년범죄자료 수집 분석
- ⑥ 소년범죄 수사
- ⑦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고소·고발사건
- ⑧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인지사건 수사

그렇지만 다음 사건은 피의자가 20세미만이어도 소년경찰이 아니라 수사과에서 취급한다.

- 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
- ② 마약, 밀수 관련사건
- ③ 특수폭행사건
- ④ 절도범, 폭력범 중 전과 3범 이상 사건
- ⑤ 성인과 소년이 공범으로 관련된 동일한 사건
- 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건
- ⑦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 ⑧ 대공 및 정보(선거법 위반 포함)사건
- ⑨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사범의 수배, 검거, 동행
- ⑩ 수사본부 설치 운영을 요하는 중요사건
- ⑪ 소년범죄 발생 및 112 신고사건의 초동수사

(2) 경찰의 보도활동

소년경찰의 목적은 소년비행의 방지와 소년의 건전육성, 소년의 복지 증진에 있기 때문에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관이 직접 역이나 유흥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 요보호소년의 발견에 노력하는 활동을 ‘보도활동’(補導活動)이라 한다.

‘범죄의 예방’은 경찰관의 주요임무이며(경찰법 제3조), 따라서 경찰관은 비행소년의 조기발견, 사건의 수사, 체포에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에 이르기 전에 적절하게 처리하여 범죄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보도활동의 장소는 특히 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공원, 유원지, 게임장 등의 오락시설, 백화점, 여관 등이다. 보도활동으로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검찰이나 소년법원에 송치되거나 보호조치되고, 보호자나 학교·직장 등에 연락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보도활동은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방법으로 행해지지만, 비행의 조기발견과는 관계없이 방법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많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다. 다만, 소년의 비행원인이 주로 학교나 직장에 있는 경우, 소년이 학교나 직장의 불량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 소년의 행동이 동급생이나 직장동료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연락이나 직장연락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조치

소년경찰이 보도활동이나 취급하는 사건에서 소년을 일시적으로 경찰서에서 유치시키는 ‘일시보호(一時保護)조치’라는 것이 있다.

소년경찰이 취급하는 미성년자 중에는 14세이하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나 요보호소년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귀

가도 시키지 않고 범죄의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장기간 유치시키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서에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가출을 하여 적당한 보호자나 숙박할 장소가 없는 경우
- ② 보호자가 소년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있어서 보호자에게 돌려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③ 소년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차 비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많은 경우

그러나 경찰에서의 일시보호조치는 가급적 단시간에 그쳐야 하며, 사안의 성격상 수감 등의 사용은 일절 허용되지 않고, 가급적 신속하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4) 경찰의 수사활동

경찰의 수사활동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를 말하며, 강제수사란 구속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강제수사는 형사사법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피의자의 신병을 체포, 유치, 구속하는 등 자유를 구속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가 많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인 것이다.

특히 성인과는 달리 20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포, 유치, 구속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 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며 이 영향은 연소자일수록 크다. 때문에 소년 중에서도 특히 어린 소년에 대한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범죄의 조사나 수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

라서 14세미만의 소년의 행위라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게 된다.

소년사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의 강제수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연소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소년사건이라면 필요 최소한의 강제수사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의 연령, 환경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할 때의 집무상 준칙을 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리집무규칙』도,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임의출석과 소년사건의 조사

사건의 조사나 사정청취를 위해 소년에게 경찰서나 파출소에 출두하도록 하여 소년으로부터 임의로 진술을 구하는 수사활동을 ‘임의출석’이라고 한다(일반적으로 ‘임의출두’라고 하고 있다). 임의출석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소년은 반드시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년은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귀가하거나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소년에게 임의출석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년 자신과 보호자에게 용건을 명확히 밝혀 납득시키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동행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 직접 호출하거나 경찰관제복을 입은 채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 출석날짜나 출석시간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4세미만의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에게 임의출석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담임교사가 동행하여 경찰의 조사에 동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년이 경찰서나 파출소라는 권위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놓여지

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얻기가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경찰에서의 조사에서는 성인의 조사와는 달리 특별히 소년이나 보호자의 불안감이나 경계심을 제거하고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범경찰관리집무규칙』에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을 두어 다음과 같이 배려하고 있다. 즉,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행장·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은 매스컴이 소년범죄를 보도할 때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소년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에 게재·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에서의 처리

(1) 검사의 임무

경찰서에서 비행소년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에 법을 정당하게 적용하도록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감독하는 활동을 한다.

경찰이 범죄자를 입건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한 후, 통고처분제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리고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 직접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 수사를 하면서 검사는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범죄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主宰者)이다. 경찰도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에 대해 모든 책임은 검사가 진다. 수사권(搜查權)은 검사에게 있으며,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수사의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고(이를 ‘불기소’라고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상참작을 할 사유가 있는지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범죄는 성립되지만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하며, 기소 여부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을 ‘공소보류’라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소중지’라고 한다.

(2)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수사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충분하고 법원에 공소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사건을 법원에 기소한다. 그렇지만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재량으로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이처럼 검사에게 기소할런지의 여부에 대해 재량을 인정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한다.

한편, 소년은 인격이 완성되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악에 감염되기 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선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범행내용이 다소 무겁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년에 대해서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사회내에서 선도보호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소년에게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사회내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선도위원의 선도보호에 맡기는 ‘선도조건부(善導條件附)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비행소년 선도보호대책 프로그램으로서,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1981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보호관찰소 관장사무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보호관찰관이 선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선도위원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였다고 해서 피의자를 그냥 석방하지는 않는다.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그리고 감독보호자나 연고자, 선도위원에게 신병을 인도하거나 갹생보호회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기도 한다.

선도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위촉을 받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행소년의 선도에 종사한다. 선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선도위원은 1996년부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되었다.

3) 법원에서의 처리

(1) 약식절차 및 약식명령

약식절차(略式節次)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공판절차)을 거치지 않고 검찰측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과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略式命令)이라고 한다. 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의 죄명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 가장 많고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사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등의 순이다.

약식절차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며 절차가 간편하고 피고인의 어익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비공개로 행해지고 검찰측이 제출한 서면만을 바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약식절차가 행해지고 또 피고인이 약식절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2) 소년사건 심리와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곳,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현재 있는 곳에 있는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심리하는 성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가 먼저 조사 혹은 심리하여, 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을 볼 때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처럼 먼저 소년부가 관할하고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검찰로 보내기 때문에 ‘반대로(逆) 송치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전문용어로

‘역송’(逆送)이라고 부르는데, 역송을 하는 경우에 소년부는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우범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한 후 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조사·심리한 보호사건에 대해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내리며,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병원 등의 위탁’, ‘소년원에의 단기송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3) 소년사건의 양형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역송(逆送)받은 사건을 조사하여 검사는 법원에 기소하게 되는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소년이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재판의 결과 유죄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형을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형법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정형)에다 가중 혹은 경감한 형(처단형)의 범위내에서 범죄자의 책임정도에 따라 선고할 형(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양형’(量刑)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벌명·형벌종류의 선택, 형벌의 기간이나 벌금액수의 결정, 집행유예·보호관찰의 유무, 미결구금일수의 산정과 벌금·과료의 환형처분 등의 형의 선고에 따른 부수처분을 결정한다. 그리고 양형을 할 때에는 ① 범인의 연

령·성행·지능과 환경, ⑤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⑦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즉,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려야 하는 중죄라 할지라도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8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성인처럼 “유기징역 ○년”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년 이상 ○년 이하” 식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상대적 부정기형(不定期刑)’이라고 하는데, 다만 장기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형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5년 이상 11년 이하”의 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교도소내에서 노동을 하는 노역장유치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

(4) 판결전 조사제도

판결전조사란 법원이 범죄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결하기 전에 범죄자의 소질과 환경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직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고 소년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다. 즉,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소년의 성격, 인생관, 경력, 환경과 교우관계 등 범죄에 영향을 미친 제반사항에 관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보호관찰소장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는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범의 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활동을 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해 보호대상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5)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법은 소년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경우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자를 수용하여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고, 소년법원에 그 결과를 보내 심리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예전에는 소년감별소라고 했는데, 1995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소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춘천, 전주, 청주, 제주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관호(觀護)조치와 분류심사를 한다. 관호란 소년의 신병확보, 심신안정을 도모하고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분류심사 및 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서, 가위탁소년의 성격·연령·경력·입소횟수·공범관계·건강상태·심판진행상황 등을 참작하여 분류수용하고 적절한 일과를 부여한다. 또한 분류심사란 소년의 성격·신체·소질·환경·학력 및 경력과 이들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소년의 교정에 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고자 의학·정신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근거로 조사와 관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심사는 면접,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생활사 및 환

경자료 분석 등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조사방법에 따라 일반 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된다. 일반분류심사는 전체소년을 대상으로 그 중 문제나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해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각종 표준화 검사, 자기기록(회상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며, 특수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의 결과 문제나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해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 V-3> 분류심사 조사사항

조사항목	조사내용
I 신상관계	성명(별명, 가명), 입원일, 비행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학력, 직업, 본적, 주소, 거주지, 거소, 비행력, 비행명, 처분일, 처분기관, 처분결과, 수용기관, 수용기간, 보호자
II 신체적 측면	건강상태, 문신·자해, 신체결함, 병력
III 심리적 측면	지능검사, 적성 및 흥미검사, 성격검사, 유의할 점
IV 환경적 측면	가정: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와 양친의 양육태도, 가정의 생활정도, 기타 특이사항 학교: 학력, 학교생활, 학업에 대한 희망지역사회 및 기타
V 행동관찰	생활관찰, 면접관찰
VI 종합의견	문제점 분석, 재비행예측, 지도방향, 처분의견

출처: 법무부 보호국 자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은 문제점의 소재 및 특징, 처우지침, 판정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심판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년법원에 보내며, 분류심사의 내용을 분류심사서에 기재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년이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분류심사서의 사본을 소년원에 송부한다.

(6)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란 법원이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유예기간 동안에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당초에 선고한 형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는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내릴 수 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그 범위내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1995년 12월 30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집행유예를 내릴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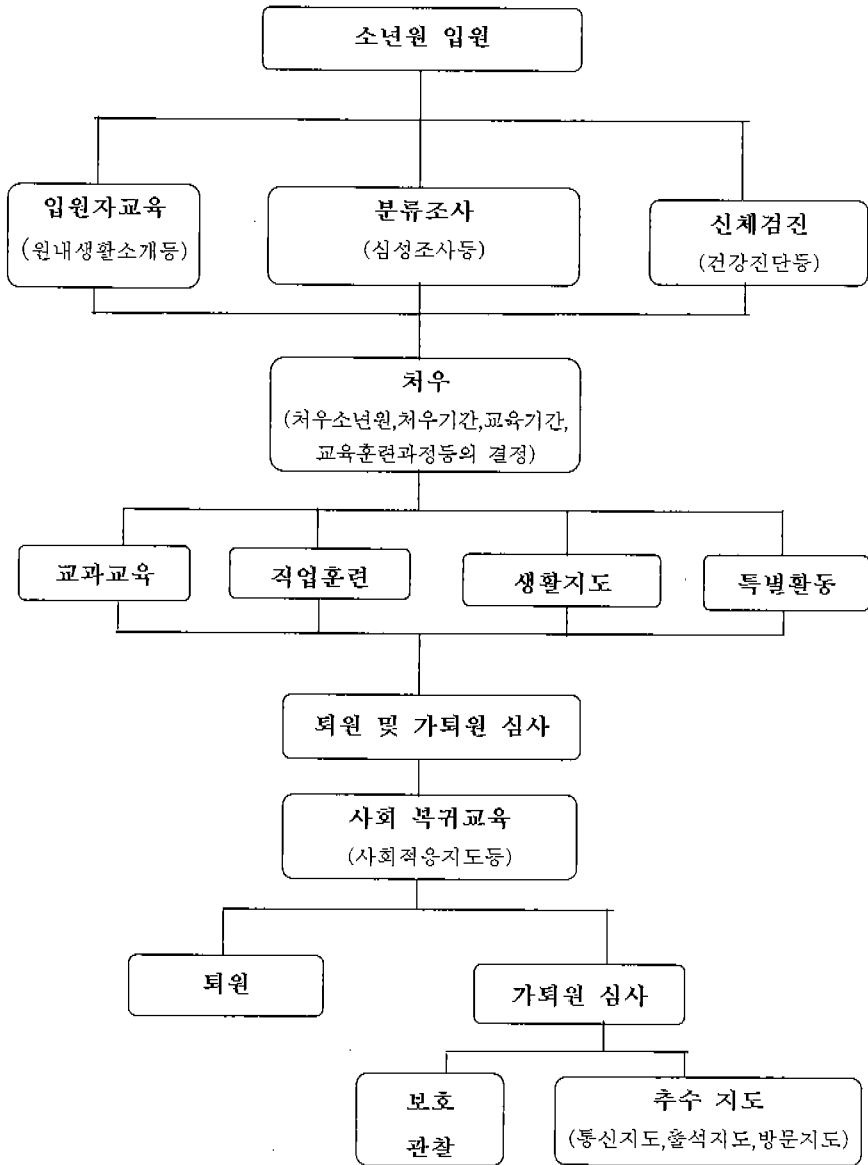
한편,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②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3.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

1)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송치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국가시설이다.



출처: 법무연구원(1996). 범죄백서.pp.413.

<그림 V-2> 소년원의 처우과정

소년원은 소년교도소와 성격이 다르다. 소년교도소는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소년원은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엄격한 규율 하에서 기초적인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생활지도와 직업훈련을 행함으로써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소년으로서 인격을 도야케 하는 시설이다. 다시 말하면, 소년교도소는 사법적 기능을 하는 시설이지만, 소년원은 교육적 기능을 가진 시설이다.

소년원의 수용기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수용기간의 상한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사실과 비행경력을 감안하여 교정이 용이한 소년은 7~12개월, 교정이 곤란한 소년은 13~18개월, 강력·상습 비행자나 교정이 극히 곤란한 소년은 18개월 이상으로 각각 분류하고,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재비행 예측결과를 적용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용기간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생들의 자율적인 자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성적을 수용기간과 연계시켜서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시키며,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한다. 그리고 교정성적이 대단히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환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그 정상에 따라 보호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있다.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통된 문제성을 갖는 소년을 동일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종합소년원과 여자소년원으로 분류하고, 같은 소년원 안에서도 연령, 비행의 질, 입원횟수, 공범 유무, 교육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다.

<표 V-4> 소년원의 종별

구 분	대상소년원	대상자	교육과정
교과교육 소년원	대구, 춘천 전주, 청주	· 문맹소년 · 14세미만소년 · 학업계속소년	각급학교 교육과정 준용
직업훈련 소년원	부산, 광주 대전, 충주	· 무의탁소년 · 18~19세 · 취업희망소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훈련
종 합 소년원	서울, 안양 제주	· 학업계속소년 · 취업희망소년	학교교육, 직업훈련 병행

출처: 법무부 보호국 자료

먼저 교과교육의 경우에는 원생간의 학력차가 심하고 나이도 12세이상 23세미만으로 그 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과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교과교육소년원과 종합소년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수업하고 있으며, 교과과목은 교육부고시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1973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안양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소를 병설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 광주, 대전, 충주의 소년원을 직업훈련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1984년에는 특별소년원인 충주소년원에 축산, 화훼재배 등 직종을 신설하여 영농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소년원에서는 퇴원생 및 가퇴원생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보호자 인도: 귀가하지 않고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등으로 재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무의탁자 지도: 의탁할 곳이 없는 퇴원생에게는 취업알선, 결연, 연고자 찾기 등 사후 보호지도를 한 후 관계자에게 인도함

○ 추수지도(追隨指導): 가퇴원생에 대하여 가퇴원 중 통신지도, 출석

지도, 방문지도를 하여 동태를 파악하고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해소함

○ 준수사항 위반자의 재수용: 가퇴원생이 가퇴원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가퇴원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함

2)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경계가 구분된 장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교도소의 경계가 구분된 장소에 수용하는 경우는 남은 형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여죄가 있는 경우, 환자의 경우 등 교도소장이나 소년교도소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한다.

소년교도소는 현재 천안과 김천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남자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천안소년교도소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초범자를 수용하고, 김천소년교도소는 미취학자와 초등학교 중퇴자 및 누범자를 각각 수용하고 있다.

소년교도소에서의 소년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성인교도소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로, 학과교육이다. 소년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등 교육규칙』(법무부령 제237호)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초등과,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중등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고등과의 과정을 두어 학과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정고시반을 편성·운영하여 각급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소년교도소에서는 천안중앙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김천중앙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둘째로, 직업훈련이다. 1969년이래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천안소년교도소는 법무부 제10공공직업훈련소, 그리고 김천소년교도소는 법무부 제17공공직업훈련소를 각각 설치·운용하여 양복봉제, 선반, 이용, 가구제작, 전자기기,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건축배판, 전기용접, 화훼재배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허가 없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직업훈련과 기업체 또는 독지가로부터 시설, 장비, 교사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지원직업훈련이 행해지고 있다.

3) 가퇴원과 가석방

소년법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키고, 23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충분히 교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시키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가퇴원의 여부를 심사하여 가퇴원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퇴원을 실시한다. 가퇴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며, 가퇴원자가 가퇴원이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하면 정식으로 퇴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는 ①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②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③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석방의 절차는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교도소의 장이 위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를 받은 후 수용시설의 장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가석방의 여부를 심사하여 가석방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석방을 실시한다.

가석방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가석방 후 재범 등으로 인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가석방 이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되면 남은 형기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석방된 후 부정기형의 단기형이 경과되고 보호관찰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위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남은 형기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소년이 전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으로써 갇혀 있는 길을 잃고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특별히 취급한다.

4) 보호처분

보호처분이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대상 소년에 대해 개별적·과학적 심리결과를 토대로 내리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으며, 이 처분으로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보호처분은 다음 7가지가 있다(괄호안의 숫자는 그 기간임).

- ①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의 감호 위탁 (6개월)
- ② 2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6월)
- ③ 3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2년)
- ④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시설에 감호위탁(6월)

⑤ 5호처분: 병원, 요양소에의 위탁(6월)

⑥ 6호처분: 소년원에의 단기송치(6월)

⑦ 7호처분: 소년원 송치(부정기)

그러나, 소년부 판사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 과도하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5)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이란 범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과 보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개선과 사회복귀를 꾀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형사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소년: 1년
- ② 형사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 집행유예기간
- ③ 소년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소년: 6개월
- ④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2년(단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된 소년: 남은 형기 기간
- 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된 소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원의 보호관찰처분, 형사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에 의해 개시된다.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소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보호관찰의 가해재(假解除) 또는 부정기형 종료(가석방된 소년이 형의 단기형이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형기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등의 은전을 베풀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선·자립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6)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해 위탁된 선도의 실시,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 기관이다. 그리고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는 형사정책,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을 두고 있다. 다만,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 보호관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민간봉사자인 보호위원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을 도와서 지도·원호 등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보호위원은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1996년 보호위원은 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과 함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처우는 지도, 원호(援護), 응급구호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지도는 개별지도와 집합교육으로 세분된다.

먼저 개별지도에서는 보호관찰관 등이 정기적 혹은 수시로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생활

적응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화개선에 주력하고, 대상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나 자극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집합교육으로는 매월 1회 신규 접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개시교육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계도하는 종료교육,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비행예방 교육,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는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소년법원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덧붙여 부과하는 명령으로서 선도 가능한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육, 준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1989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명령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 프로그램으로는 공원이나 등산로의 쓰레기를 줍는 등의 자연보호활동,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하다. 그리고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회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심성개발 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 폐해교육 등이 있다.

8) 갱생보호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912년부터 출옥인보호회, 사범보호회 등 명칭으로 있어 오다가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으로 갱생보호회를 운영하던 중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갱생보호 관련규정이 이 법에 흡수되었다.

갱생보호 담당기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갱생보호사업자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이다. 갱생보호대상자나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판례 및 법률사례²⁴⁾

1) 소년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판례1>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시점

(대법원 1997. 2. 14, 96도1241)

소년법 제59조가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단하는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9조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년에 대한 장래의 행형상의 처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년의 과거 즉

24) 본장에 수록되는 판례는 소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하였고, 법률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관련 기관에 의뢰된 법률자문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범행시에 아직 형사책임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안을 둔 것이라 할 것이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소년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소년법 제59조와 마찬가지로 재판 당시 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당시 아직 형사책임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연령이었다는 특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우리 법은 형사책임능력이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완성된다고 보고 범인의 행위 당시의 나이를 14세, 18세, 20세로 나누어 형사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범인의 연령을 양형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1조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둔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1995. 9. 20. 이 법원에 송부되었으므로 만일 이 법원이 좀더 빨리 심리를 시작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법원의 사정으로 심리가 늦게 개시된 결과 그 사이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심리가 늦게 개시된 결과 그 동안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의 감경을 할 수 없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할 뿐 아니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나뉘어져 불합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 소년이었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 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성장 도중에 있어 그 개성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판례2>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시점

(대법원 91.12.10 선고 91도2393 판결)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미만 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미만 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 자로서, 20세미만 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은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은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데서 나왔거나 위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판례3> 소년들의 유희와 위법성

(대법원 77.08.23 선고 77다604 판결)

어린이들이 편을 갈라서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 중 상대방을 원박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 위 삼각놀이에서 11, 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따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판례4> 소년법 제53조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대법원 86.12.23 선고 86도2314 판결)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

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5>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가부

(대법원 89.05.09 선고 89도522 판결)

구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수종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판례6> 소년에 대한 양형 부당

(대법원 91.10.08 선고 91도1718 판결)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재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판례7> 형의 집행의 종료와 전과의 소멸 여부

(대법원 83.02.08 선고 82도2896,82감도626 판결)

소년법 제60조의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소년으로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전과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판례8> 소년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의 가능 여부

(대법원 83.04.26 선고 83도387,83감도80 판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다.

<판례9>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대법원 89.09.29 선고 89도1440 판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10> 자수와 소년에 대한 감경 필요성의 여부

(대법원 90.04.27 선고 90도321 판결)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판례11> 유기형 선택의 경우와 부정기형

(대법원 판결 66.07.19 선고 66도735)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한다.

<판례12> 무기징역형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정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

(대법원 90.10.23 선고 90도2083 판결)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정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

<판례1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 6. 9, 97다4940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 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소년사건에 대한 법률사례

(1)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제도

■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저의 15세된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싸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제2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전과자가 된 것이지요?

☞ 소년법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2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와 법원의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처분을 받은 셈이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된다.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및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이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저의 아들은 만 15세인 중학생으로서 우발적으로 친구들과 절도를 한 죄로 구속되었는 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형사재판이나 소년법원의 처분 등을 받지 않고 선도위원들에게 보호 조치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위 사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담당검사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20세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죄질·범죄후의 태도·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누우치는 마음이 현저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소년선도위원(지역사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독지자로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활동을 임무로 하는 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조직·상습폭력범, 치기범, 현저한 파렴치범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조건부기소유예의 일종으로 일정조건(그 소년이 다시 범행을 하거나 소년선도위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하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기소 될 수도 있다.

선정방법은 주임검사가 당해 소년사건의 비행성예측자료표와 소년범환 경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참작하고 보호자나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등을 임의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한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의 준수사항은 소년선도위원을 월 1회이상 방문하여 선도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선도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이탈해서는 안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장기 출타시 소년선도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집행유예 제도

■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지

저의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절도미수사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로는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거나 법원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 중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런데 판례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 면제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므로(대법원 1971. 3.9. 선고, 70누 167판결) 위 사례의 경우, 아들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없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으며, 나중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므로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형을 합하여 집행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도 절도미수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절도미수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

되지 않게 되어 결국 종전의 형은 집행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갑'은 수년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로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받아야 되는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형법 제63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갑'에 대한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까지 강간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갑'은 유예된 형인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한다.

(3) 소년범의 보호

■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저의 아들은 현재 13세인데 며칠 전 동네 아이들과 장난을 하던 중에 실수로 던진 돌맹이가 '갑'이라는 아이의 머리에 맞아 '갑'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된 일이므로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갑'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려고 하였는데, '갑'의 부모는 저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지급치 아니하면 제 아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겠다고 합니다. '갑'의 부모가 제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지요?

☞ 위의 가해자가 한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

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말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나이가 행위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미만 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시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저의 아들 '갑'(만18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검사에 의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요?

☞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중 수사결과 별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소년법 제49조).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 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6항). 그러나 실무상 가위탁 취소의 예는 보기 힘들고 위탁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사례는 관할소년부에 보호자인 아버지에게의 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난 후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보호소년을 인수받으면 된다. 그러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위와 같은 신청은 직

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

■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판결시 성년이 되었다면

저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저는 만19세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에 저는 만20세를 넘기게 되어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지 못해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하여 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더 이상 소년이 아닐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3.18.선고, 69도114 판결). 예컨대,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하여진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항소심은 단기형인 징역 6월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59.8.21.선고, 4292형상2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정기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지만, 그 형은 1심판결의 단기형(징역 2년)보다 무거워서는 안된다.

(4) 절도사건

■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저의 아들 '갑'은 친구 '을'의 충동에 의하여 '을'과 함께 그의 조부 '병'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쓴 사실이 있는데 '병'은 '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저의 아들 '갑'에게만 위 금품의 변상을 요구하면서 변상하지 아니하면 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이 형사상 고소하면 '을'은 처벌받지 않고 '갑'만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요?

☞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344조에서 이를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은 '병'의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되나 그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갑'은 '병'과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 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344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저는 길가에 세워 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용하고 1시간 후에 오토바이를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10미터 떨어진 길가에 놓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되는지요?

☞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는 사용절도의 처벌에 대해 우리 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 의사²⁵⁾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면 목적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뿐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소유권을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불법사용)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위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

25) 재물 또는 가치에 대하여 소유권자에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여 소유권자를 계속 배제하고, 재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처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를 자기의 재산으로 편입시킬 의사를 말한다.

VI.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제

1.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

청소년을 형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를 포괄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퇴폐행위, 가혹행위, 호객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청소년 불법고용을 비롯한 노동권의 보호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각에서 다루고 있는 현행 법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항과,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항을 두고 있다.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의 차단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결정한 매체물과(제2조 제3호)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제12조 제6항) 가리키며, 이때 후자의 경우는 최종 심의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해매체물로 간주된다.

① 유해매체물의 범위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7조 제1, 2호)
2.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제7조 제3호)
3.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제7조 제4호)
4.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제7조 제5호)
5. 간행물 (제7조 제6호) : 특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및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등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광고선전물(제7조 제7호) : 간판·입간판·벽보·전단 등 옥내·외 광고선전물,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된 광고선전물
7. 외국매체물

② 심의기관 및 심의대상 매체물

각종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의 심의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체물 심의기관으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보호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고 있는 매체물은 다음과 같다.

<표 VI-1> 매체물 심의기관 및 심의대상 매체물

심 의 기 관	대 상 매 체 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간행물, 만화, 전자출판물, 간행물에 수록·게재된 광고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및 동매체물과 관련된 광고물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케이블 TV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및 통신상의 광고
시·도	육외광고물관리법상의 광고선전물
청소년보호위원회	·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 ·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

출처 :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

③ 심의기준

심의기준은(제10조 제1항)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제1호),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제2호),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제3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제4호),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의 문화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매체물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고 밝히고 있다.

④ 등급구분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하고 결정함에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9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등급 구분을 할 수 있다.

⑤ 규제조항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규제는 다음 <표 VI-2>와 같이 규정된 의무 조항을 소홀히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크게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VI-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의무 조항 및 위반시 벌칙 조항

구 분	의 무	내 용	벌 칙
시 정 명 령 대상 (제37조)	표시의무 (제14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청소년에 유 해한 매체물임을 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1호)
	포장의무 (제15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내용물 을 열람할 수 없도록 포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2호)
	표시·포장훼손 금지(제16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유해 표시·포장에 대한 훼손 금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2조)
	판매금지 (제17조 제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 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1항)
	무표시·무포장전 시·진열금지 (제17조 제2,3항)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징역 (제51조 제3호)
	구분·격리 (제18조 제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하여 격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4호)
	자동·무인판매기 전시·진열금지 (제18조 제2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에서 전시·진 열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4호)
	방송시간 제한 (제19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는 방송시간 제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5호)
과태료 대상	광고선전물설치· 부착·배포금지 (제20조 제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선전물은 공공이 동행하는 장 소등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6호)
	납본의무 (제13조)	국내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자 수입하는 간행물은 청소년보호 위원회에 납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제14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1호), 시정명령대상(제37조 제1호)이 된다.

각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 의무자 및 유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VI-3>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방법

구 분	표시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수입·복제한 자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구입불가	· 당해 매체물에 표시문구는 60, 15mm 이상의 직사각형 안에 적색 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 ·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시작전에 ○○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된다는 자막표시
게임물	제작·수입·복제한 자	19세미만 이용불가	
오락적 관람물(영화, 연극, 무용)	공연장 경영자	19세미만 관람불가	· 표시문구는 400, 100mm이상의 직사각형안에 적색 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 · 표시는 당해 공연장 매표소, 출입구에 함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영상 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자	19세미만 이용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을 표시
방송프로그램	방송을 하는 자	19세미만 시청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을 표시 · 프로그램의 방송중에는 지름20mm, 두께 3mm이상인 크기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적색바탕에 흑색으로 기재한 표시는 화면우측상단에 함
간행물	제작·수입·발행한 자	19세미만 구독불가	· 표시문구는 60, 15mm이상인 직사각형안에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기재, · 표시는 당해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우측상단에 함
광고선전물(간행물에 포함)	간행물의 표시 의무자	19세미만 구독불가	· 간행물의 표지에 간행물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출처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제 14조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2호), 시정명령 대상(제37조 제2호)이 된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포장 훼손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제16조),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제52조) 받게 된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제17조 제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항)을 받게 된다.

■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조 제2항 및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3호)을 받으며, 시정명령대상(제37조 제3호, 제4호)이 된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하여,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쉬운 곳에 격리하여 놓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영 제17조).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격리된 장소에는 19세미만 구입 또는 대여 불가라는 판매 등이 금지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영 제17조).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4호)을 받으며, 시정명령대상(제37조 제5호)이 된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진열 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 제2항). 단 자동기

계장치 등을 설치하는 자가 청소년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입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영 제17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4호)을 받고, 시정명령대상(제37조 제6호)이 된다.

■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은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과 방학기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제51조 제5호).

■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결정·고시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 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6호)을 내며, 시정명령대상(제37조 제7호)이 된다.

■ 납본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자 수입하는 간행물은 국내유통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제13조).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제56조 제2항).

(2)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의 차단

① 유해약물의 범위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유해약물은(제2조 제4호 가목) ① 술 ② 담배 ③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④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⑤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⑦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⑦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보면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등을 거론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물건이란(제2조 제4호 나목) 청소년유해 성 관련물건과 완구류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유해 성 관련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으로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가리키며, 청소년유해 완구류 등은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신체·생명·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② 규제조항

■ 판매·대여·배포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는 제외가 된다(영 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하고 술·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8호)을, 기타의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3호)을 지불하게 된다. 단 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되며, 환각물질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표시의무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26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1호)을 내게 된다.

<표 VI-4> 청소년 유해약물의 표시방법

구 분	의 무 자	표 시 문 구	표 시 방 법		
			크 기	색 상	위 치
술	제조·수입한 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의 내용	상표 면적의 1/20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	바탕 색 과 보색	업계자율
담배	제조·수입한 자		담배값 뒷면 단면 면적의 1/5이상 크기의 사각형내에 기재	바탕 색 과 보색	담배값 뒷면
부탄가스	제조·수입한 자	본 제품의 흡입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용기면적의 1/20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 색 과 보색	업계자율
환각물질	제조·수입한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업계자율	바탕 색 과 보색	업계자율
그외의 약물, 물건	제작·수입한 자		상표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 색 과 보색	업계자율

출처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 1, 2항

(3)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① 유해업소의 범위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등의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디오방, 성인전용 노래연습장)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무도학원, 카바레)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전화방)
6.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첫째,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접대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

려가 있는 영업. 둘째,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셋째,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넷째,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들고 있다.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는 다음의 7개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방, 카페, 소주방, 호프집 등)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관, 호텔, 안마시술소 등)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²⁶⁾

26)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첫째,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둘째,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营业을 말

위에 제시된 법규 중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휴게 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 티켓다방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을 말한다.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관, 호텔 등의 숙박업과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제외된다),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규제조항

■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제2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제50조 제2호). 만약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제49조).

■ 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제24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경우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제49조).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7항).

■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제24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제51조 제1호).

<표 VI-5> 청소년출입·고용 제한 표시방법

구 분	표 시 문 구	표 시 방 법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문구는 한면이 400mm이상, 다른 한면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출처 : 청소년보호법 제19조의 2

2)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퇴폐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유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매개·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제26조 제2항)란 크게 성적퇴폐행위, 가혹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1) 성적 퇴폐행위

성적 퇴폐행위란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의 성적 접대행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법제49조의 2). 또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행위 및 청소년

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49조의 3). 성적접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종전에 유흥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단순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으나 단순고용이 아니라 애무,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유희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그 외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 목욕보조, 알몸접대 및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성적접대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숙박업소 및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윤락업소에서의 19세미만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도 이에 해당된다²⁷⁾.

또한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은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 행위는 물론 여성접대부를 들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 변태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보도방,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접대부로 소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2) 가혹행위 처벌

가혹행위란 장애, 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와 속칭 ‘앵벌이’ 등을 이용한 구걸행위 및 청소년 학대행위를 말한다. 여기의 청소년 학대행위에는 옷을 안 입히거나 굶기거나 잠을 안 재우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 정도를 넘어서는 징계행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생명·신체의 안전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27) 윤락업소의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25조제1항), 윤락행위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대우가 포함된다.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및 구걸을 시키는 구걸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49조의 4). 여기서 청소년 학대행위는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그 외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273조 제1항)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우선하며, 더욱 엄하게 처벌된다.

(3) 호객행위

호객행위란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행하여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법제50조 제4호).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속칭 ‘빼끼행위’)를 시킨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노래방과 비디오방 등 기존에는 호객행위²⁸⁾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던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시킨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4)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여관·모텔·호텔 등 숙박업소, 비디오방, 만화방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8) 호객행위자는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하는데, 경범죄처벌법 상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돌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사람”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다(제1조 제10호). 특히 업주의 불법 퇴폐, 변태영업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제50조 제4호).

(5)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 속칭 일본식 원조교제는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19세미만 청소년²⁹⁾과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속칭 일본식 '원조교제'나 19세미만 청소년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성교행위 뿐 아니라 입,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

29) 한편, 13세미만의 부녀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대가여부, 폭력행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중전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의거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의 중형에 처한다(형법 제305조).

<표 VI-6>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에 관한 처벌법규

조 항		조 문 내 용	벌 칙
성 적 퇴 폐 행 위 처벌	제26조2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 2)
	제26조2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과의 용을 나누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 3)
	제26조2 제3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 3)
가혹행위 금지	제26조2 제4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공에게 관찰시키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 4)
	제26조2 제5호	청소년에게 구절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절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 4)
	제26조2 제6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 4)
호객행위 금지	제26조의2 제7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4호)
불기문란 장소 제공 행위 금지	제26조의2 제8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불기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4호)
원조고제 금지	제26조의2 제9호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적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4호)

출처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3) 불법고용 및 노동으로 부터의 보호

(1)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고용에 관한 규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0조 제2호). 만약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제49조).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4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51조의 1호)고 규정하고 있다.

(2) 미성년자의 노동보호

미성년자의 노동보호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자와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의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자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5장 ‘여자와 소년’에 다루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62조)

15세미만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해주고 있다.

이전의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은 13세미만 자였으나 97년 3월 개정되면서 15세미만 자로 규정하면서 보호연령을 확대하였다. 또한 취직인허증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1·32조에서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이를 허가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사용금지(제63조)

여자와 18세미만 자는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지직종은 시행령 제3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18세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을 보면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제1호),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제17호), 높이 5미터이상의 장소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제37호),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제55호) 등과 같이 위험한 업무 내지 장소에서의 작업을 금하고 있다.

■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64조)

취업이 허용되는 15세이상의 연소 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 근로시간(제67조)

15세이상 18세미만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야간작업 및 휴일근로 금지(제68조)

여자와 18세미만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갯내 근로금지(제70조)

여자와 18세미만 자는 갯내에서의 근로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갯내의 근로환경이 위험할 뿐 아니라 외부와 차단된 관계로 풍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②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착취 금지조항

아동복지법 제1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서는 18세미만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호는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接客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제34조의 4)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에서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를 금지조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1호).

2. 민사법상의 보호

1) 미성년자의 민사상의 권리

민법상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 제4조)로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행위 능력을 제한 받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항).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증여 및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권(민법 제5조 1항)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주고 불이익이 되지 않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다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여기에 해당된다.

■ 재산처분권(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영업권(민법 제8조 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营业을 허락 받은 경우, 그营业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 혼인 후 성년자의 권한 취득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 807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8조 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성년자로 의제되므로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 단독 유언권(민법 제1061조)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무한 책임사원권(상법 제7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으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 근로계약권(근로기준법 제65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권자 후견인 또

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임금청구권(근로기준법 제66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첫째로 친권자, 그 다음으로 후견인인데, 이들 법정대리인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그 밖에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책임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민법 제753조), 이 때에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등)와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유치원장, 정신병원장 등)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스스로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5조).

2)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보호

미성년자는 민사상의 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거래가 원만하게 성립되어 부모나 미성년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거래는 유효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거나, 거래과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모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 거래행위를 할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예로 재산처분

권 및 영업권에 의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학용품을 사는 거래행위라든가, 혹은 부모가 차려준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은행에 입금 혹은 등록금 지불을 의뢰한 돈을 가지고 미성년자 마음대로 물건을 산 경우 부모는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마치 성인인 것처럼 위장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면, 그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법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미성년자의 거래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3. 법률사례³⁰⁾

1) 청소년 유해매체물

■ 미성년자라 함은 정확히 몇년 몇월 몇일 이후 출생자인가?

미성년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해 만19세 그러면 잘 모르겠고 가령 오늘이 99년 11월 15일 일 경우 1980년 11월 15일 이전 출생자는 미성년자가 아닌지요?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은 “만19세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생년월일로 기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80.11.15일 출생자인 경우 '99.11.15일이 되면 만 19세에 해당되어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0) 본 법률사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한것이다.

■ 대여횟수와 과징금 부과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판매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통관련업자의 유해매체물 대여에 관하여는 대여횟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동일시각, 동일장소에서 2명의 청소년이 동시에 각각 다른 PC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된 경우 두건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2명중 1명이 게임비를 모두 내기로 했다면 1건으로 처리되는요?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6]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유통관련업자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항은 개별적인 위반행위 건당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명의 청소년에게 각각 다른 PC를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동법 제49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 제외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행정처분과 과징금, 어느 것이 우선

구청에서 허가 받은 비디오방, 같은 호실에서 만19세의 남학생과 만17세의 여학생이 연소자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하다 적발된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 만19세인 자를 출입시킨 경우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 만19세미만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위 사례의 경우, 같은 호실에서 적발된 사건이라 할 지라도 법률적용 사안이 달라 두가지 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된다.

2) 술 · 담배 판매

■ 강요된 상태에서의 담배 판매

제가 딸에게 저의 영업장을 맡기고,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이미 약간취한 상태의 청소년 2명이 딸에게 술과 담배 팔기를 강요, 학생들에게는 담배를 안 판다고 거절하였으나 집을 주며 계속 팔기를 강요하였고 위협과 보복이 두려워 판매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다시 그 아이들이 들어와 술 팔것을 요구하여 야단치며 거절하자 다른 상회로 가 술을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관공서에서는 귀책사유가 술을 판 사람에게 있다고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우송해왔는데, 내야하는지요?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울러 판매회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사례와 같이 강요에 의한 담배 판매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장소대여자가 술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은 누가 내는가?

저희가 평상시 잘 아는 동아리 대학생들이 자선을 목적으로 장소(일반음식점)를 하루 빌렸으면 하기에 무료로 빌려주었는데, 19세미만 자에게 술을 판매해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추후 과징금은 누구에게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인 제가 내야되나요, 아니면 학생이 내야 되나요?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술판매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술 판매자의 처벌 대상은 업주인가 혹은 종업원인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사자가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의 형사처벌대상은 누구인지요? 업주인지 혹은 술을 판매한 종사자인지?

☞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사자가 법률상 업주의 대리인 등이 아니고 단순히 종업원으로 고용된 경우, 당해 업소의 모든 책임과 의무 등은 당해 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종사자가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주로 당해 업주가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업주의 법적 지위, 업주와 종사자와의 고용관계, 종사자의 행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에서 술판매 할 때, 이중 행정처분이 가능한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행정처분시 출입과 술제공을 별개로 보아 이중으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술과 담배 동시 판매할 경우의 행정처분과 같이)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소년출입금지 의무와 술판매금지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때에는 그 각각의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 성인단체 술 손님에 청소년이 두 명 끼어 있었을 경우

성인인 5명과 청소년인 2명이 생일파타라 해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켰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이 술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고, 모두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계산도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단체손님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록 성인이 주문하고 계산을 했다고 해도 청소년이 음주를 한 경우 그 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동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술판매 금지의무 위반이 된다.

■ 무허가 포장마차 주류판매에 대하여

공원앞 무허가 포장마차가 도로에서 영업을 하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 대상 술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불법고용

■ 연소자가 일반 노래방에 출입했을 경우

노래방에는 연소자실이 있는 업소와 연소자실이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의 청소년이 연소자실이 있는 업소에서 연소자실 아닌 일반실을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되는지요?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실이 아닌곳'(일반실)에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18세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의 일반실(성인실)을 출입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된다.

■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 등 단순노동을 시킨 경우

저는 나이트클럽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청소년이 처음에 20세라 하여 주민등록증과 보건증을 해오라고 했더니 해 오지 않아, 보건증을 해 올때까지 기다리면서 정식직원이 아니고 청소를 하는 등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거의 한달 동안 보건증을 해오지 않아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금 350,000원을 주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후 친구들과 싸워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던 중, 청소년 불법고용문제가 제기되어 검찰벌금 50만원, 행정에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한다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지요?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에서는 청소 등 단순 고용을 포함한 19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24조제1항 및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의 3에 의하여 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청소년을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시킨 경우

나이트클럽에서 시간당 일만원씩 주기로 하고 청소년(여, 18세)을 고용하여 동 업소 앞에서 손님을 끌 목적으로 홍보전단을 배포, 호객행위를 하게하여 경찰에 적발 통보된 후, 관련 부서로 통지하여 위생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호객행위)으로 행정처분되었을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이며 또한, 동법 제26조의 2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사례의 경우 고용금지의무 위반과 호객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각각이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호객행위금지 의무 위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2인의 공동명의 위반업주에게 과징금 부과방법

2인의 공동명의로 무허가 단란주점을 경영하며, 청소년 1명을 고용하여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 2인의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혹은 각각에게 과징금 500만원씩을 나누어 부과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반업소가 2인 공동명의인 경우 2인 공동명의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면 된다.

■ 남자와 여자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법 적용이 다른가

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2명을 고용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명은 남자이고 1명은 여자를 고용하여, 여자 1명은 청소년 유흥접객원으로 사회위생과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남자 청소년 1명에 대하여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한다면서 처분사전통지서가 와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 고용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에서는 19세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별표6]의 3에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자 청소년의 고용은 식품위생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4) 미성년자의 민사상 보호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는 15세미만 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문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수행케 한다면 친권자 등이 법정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하여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직접지불의 의무를 과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

저의 아들 '갑'은 만18세의 소년으로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저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갑'이 항소를 취하했는데 이 경우 항소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 '갑'이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아들 '갑'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아버지가 항소 제기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3.9.13.선고, 83도1774 판결).

참고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54조).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일하던 봉제공장의 고용주는 3개월간의 임금을 체불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라도 해볼 생각인데, 주위 분들의 말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제 47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66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 것이다. 이 조항이 임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판례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 8.25.선고, 80다3149 판결)라고 판시하여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어 소송행위까지도 포함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이지만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고등학교 2학년인 저의 딸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저의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사고당시 만18세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한 판결도 있었으나(대법원 1989.1.24.선고, 87

다카2118 판결), 최근의 판례는 민법에 의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8.23.선고, 93다60588 판결: 1989.5.9.선고, 88다카2745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2.8.선고, 93다136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장난하던 중 발생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의 아들 '갑'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교 3학년생으로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 '을'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장난으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어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을'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배상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 먼저 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 및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12.26.선고, 95다313 판결).

그리고 판례는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밀접·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고교 2년생은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가해학생의 평소 품행이 온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이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3.2.12.선고, 92다13646 판결).

따라서 '을'이 평소 품행이 온순하여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학교법인이나 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13세 6개월된 중학교 3년생이 학급번호 53, 54로 비슷한 체구의 학우를 장난으로 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평소 급우를 못살게 하는 학생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담임교사의 과실을 40%, 부모의 과실을 60%로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4.8.23.선고, 93다60588 판결).

■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저의 딸은 만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미성년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친권의 내용은 자(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신상의 보호라는 것은 자(子)의 생활을 돕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일반적인 애정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재산관리는 자(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그 재산에 관하여 자(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친권은 명확하게 신상보호권과 재산관리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법은 친권이 당연히 자(子)의 재산관리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 법원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재산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 미성년인 딸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자기의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862조의2). 그리고 미성년자가 직접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은 미성년자의 친권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이에 갈음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10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子), 즉 아버지

지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5세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략권(代諸權)도 아버지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의사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 회사는 화장품의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갑'과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장래 출고할 화장품의 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더니,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을'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서 아들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겠다고 합니다. '갑'은 남편과 사별하고 '을'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이 '을'을 대리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유효한지요?

☞ '갑'은 '을'의 단독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지만,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 즉, 친권자가 그 자녀와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직접 그 자녀를 대리할 수는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자녀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여기서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고 한다(대법원 1994.9.9.선고, 94다6680 판결). 그리고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이해 상반 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1971.7.27.선고, 71다1113 판결).

그러므로 위 판례에 비추어 '갑'이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을'의 부동

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갑'으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받은 사업체의 명의

'갑'은 18세인 장남 '을'과 16세인 딸 '병'의 친권자이며, '을'·'병'과 함께 남편인 '정'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갑'은 남편 '정'이 경영하였던 사업체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갑'의 친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지요?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4.13.선고, 92다54524 판결).

그런데 '갑'이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할 때 '을'과 '병'도 '갑'과 공동상속재산인 사업체에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업체만을 볼 때 '을'과 '병'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갑'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상반되어 '갑'은 가정법원에 '을'과 '병'의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 청구하여 '을'과 '병'의 사업체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 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는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할 행위,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녀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녀를 대리하여 한 경계계약(更改契約),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등이다.

■ 초·중등학교의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 담배를 피운 학생을 붙잡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차례 때렸더니 불행하게도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그리고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게 된다(동법 제20조 제3항).

교사의 징계권행사로써 처벌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관례에 의하면 "그 처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른바 정당행위로서 법률상 허용되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징계권행사로 할지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징계행위로 인하여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컨대, 중학교 교장직무대리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의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6.4.27.선고, 75도115 판결), 위 사례의 경우처럼 고막파열까지 되었다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보여지며,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고로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正當性),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相當性),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法益權衡性), 넷째 긴급성(緊急性), 다섯째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補充性)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4.15.선고, 93도2899 판결).

5)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보호

■ 미성년자가 고가의 책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의 취소 여부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전 방과후 학교 앞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15,000원씩 10개월간 불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는데, 저는 그 책이 불필요한 책이어서 즉시 반환하기 위하여 찾아가 보았지만 온데 간데 없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고심 끝에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어 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 가라"고 통지를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금청구서를 받았으므로 이런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요?

☞ 위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규정에는, ①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규정,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③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우선, 민법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의 법률행위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46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곧 계약은 취소되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그리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

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청약을 받거나 계약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임과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52조에서 “이 법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동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제5조에서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므로 대체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약철회권행사의 효과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도 반환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VII.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현장의 지도자가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형사법상 청소년범죄의 유형, 소년사건의 처리과정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 및 청소년을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규를 알기 쉽게 기술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문제행동과 비행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 및 이론의 고찰을 통해 유사개념의 범위를 정하고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처리현황을 통해 최근의 청소년비행 동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청소년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와 현행 중·고등학교의 법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법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한편, 형법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상해, 폭행, 협박, 강간 및 추행, 주거침입 등 폭력관련 범죄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관련 범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일선의 지도자나 교사가 알아두어야 법률을 개괄함에 있어, 소년법을 중심으로 하여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관한 법규 및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을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특히, 법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기관에 의뢰된 법률자문·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특징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며 일탈, 범죄, 비행 등 유사개념이 많아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행동의 유형도 학자마다 달리 분류되고 있다.

‘청소년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설명할 때 ‘청소년비행’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넓은 의미로 청소년문제행동이나 청소년비행을 규정할 때에는 범죄행위 뿐 아니라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규범위반)행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비행은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 뿐 아니라 범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두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은 거의 같은 범주이며, 단지 하위범주(sub-category)를 형성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청소년문제행동 또는 청소년비행은 청소년들이 범하는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를 받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최근의 청소년비행 및 범죄동향을 보면, 절도와 강도는 청소년들이 위반하는 형법범죄 중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며, 전체 절도사건과 전체 강도사건의 50%정도가 청소년에 의해 범해진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현상을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청소년 범죄의 또다른 특징은 저연령화 현상으로,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16세(76.5%)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업소출입, 아르바이트 및 고용관련 문제 등 그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에 대해서조차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선의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청소년

년상담원들도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이 무엇인지 모르며(65.2%), 청소년의 특정 비행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른다(57.6%)고 응답하여 법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 강도, 절도를 비롯하여 성범죄, 마약, 도박으로까지 이어져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의 흉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의 법의식 및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법의식과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교육은 법 일반에 관한 내용과 헌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청소년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 및 법적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이라는 법률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교육에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헌법분야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법분야의 강화와 청소년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및 소년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도덕성이나 법의식 수준은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성이 있음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덕성이나 법의식 수준이 낮아 미성숙한 사고를 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문용린 외, 1994:72)는 법의식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비행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죄를 지으면,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무슨 행동을 죄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에 저촉되고,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론적으로도 처벌에 대한 인식은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가 부분적

으로 있고, 우발적이고, 현실도피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사나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은 청소년 관련 법에 관한 지식의 폭이 넓어야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없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근래와 같이 학교 내부에서 기물파괴, 학교폭력,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등 갖가지 유형의 문제상황이 발생하고, 학교 외부에서는 유해매체물 접근, 업소출입, 약물남용 등 여러 유형의 청소년비행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법적으로 구속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가를 정확히 알아두는 일은 지도자로서의 자신감 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도자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고려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언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여러 분야에서 강구되고 있다. 도덕성이나 범의식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비행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처벌에 대한 인식이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상황을 접하는 지도자들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비행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대처능력이 생겨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문제행동 예방과 지

도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법 규범의식의 함양과 청소년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법률지침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1) 법 규범의식 함양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위법적 사례, 법체제나 제도에 대한 불신 혹은 무관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법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법 규범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법문화 혹은 국민의 법의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국가의 사회현상과 질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준법정신이 희박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의 고취 및 법적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은 잘못된 법문화를 쇄신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법률지침서 개발

지위비행을 비롯한 청소년 일탈행위, 청소년비행 및 범죄 등 각종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청소년비행과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당사자인 청소년 자신들을 대상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과정 및 처벌조항 등 처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법적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대안의 하나로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지침서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에 관련된 청소년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과 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즉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받기 위한 법률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사례 중심의 법률해석이 겸비된 지침서의 개발이 효율적이다.

2) 구체적 정책방안

(1) 일반시민 대상 법률강좌의 활성화 및 보편화

언론 매체의 교양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와 영역을 달리하는 법률강좌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함으로써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한 구청 및 구민회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법률강좌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 예를 들어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업주 처벌, 청소년 보호구역 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법률강좌를 실시하여 시민 혹은 부모로 하여금 법적인 문제의식을 갖도록 한다.

(2)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법률지침서 개발

① 청소년비행 사례 수집 및 법률적 지식 요구도 조사

교사,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 등 현장의 지도자를 위한 청소년문제행동 관련 법률지침서를 개발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청소년비행 사례를 수집하고,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절차 및 처벌조항에 대해 현장의 지도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현실성 있는 법률지침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청소년문제행동 유형별 법률지침서 개발

청소년이 행하는 폭력, 절도, 방화 등 청소년범죄, 음주나 흡연, 성비행, 유흥업소 출입 등 지위비행을 비롯하여 청소년문제행동의 유형별로 법률적 지식을 습득케 할 수 있는 법률지침서 개발을 통해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실제적으로 문제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침서 개발 및 법률교육의 실시

① 청소년문제행동 유형별 법적 처벌조항을 체계화한 법률지침서 개발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선별능력을 길러주고, 비행을 저지를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인지하도록 하는 법률지침서 개발을 통해 법적인 무지함에서 발생하는 비행과 우발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비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대상의 법률지침서 라는 점에 착안하여 구체적이고 쉽게 기술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② 학교에서 청소년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

처벌에 대한 지각과 비행억제의 상관관계가 여러 선행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비행과 관련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금품갈취, 절도, 폭력집단 가입, 패싸움을 비롯하여, 음주나 흡연, 환각물질 흡입, 성비행, 음란물 구독, 유흥업소 출입, 가솔 등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③ 법교육 교과서에 소년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내용 첨가

현재 「정치경제」나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내용에 소년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

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적 규범의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청소년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갈등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한 법률지침이란 가정에서는 학부모, 학교에서는 교사나 청소년지도사등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할 생활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본인은 물론 가정적으로나 사회·국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작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아 어떠한 사회적 제재 내지 형벌을 받게 되는가를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의 문제행동을 자제하고 비행 내지 범죄행위로 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비행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문제행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 즉 가정이나 학교로부터의 통제가 약화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행가치를 습득하고 비행기술을 익히며, 이미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경우 자신이 범한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의식도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태까지 나아가기 전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비행과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교육의 의미와 법률지침서의 개발은 하나의 소명처럼 다가온다.

참고 문헌

- 고성혜, 전명기, 박창남, 이희길(1997).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성혜, 한유진(1995). 비행청소년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수희(1994). 재미있는 형법. 법조각.
- 김동일(1993).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1-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병묵·이영준(1994). 생활과 법률. 법문사.
- 김상균·김연옥(1997).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일수(1992). 법·인간·인권. 박영사.
- 김종원외 50인(1997).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 김준호(1989).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측정. 청소년범죄연구, 제7집 pp.173-193.
- 김준호(1990). 사회학분야에서의 청소년비행연구 동행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창간호. pp. 18-33.
- 김준호·박정선(1990).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1-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해광(199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04.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이동원(1996a).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연구보고서 96-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1996b).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5-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박미성(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91-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1996).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찬환(1998). 초등학생의 법의식 발달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1999).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 류성욱(1995). 고등학생의 법의식과 법교육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기(1997). 가정환경이 여고생의 법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군산, 장항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연구보고서 90-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혁(1992). 초중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 박영규(1997). 형사문제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법률용어사전편찬위원회(1998). 신법률용어사전. 한국고시회.
- 법무연수원(1998). 범죄백서 1998년판.
- 연정세(1998).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 이명숙(1995). 생활법률이해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국(1993).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법교육의 내용구성: 고등학생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연(1998).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순애(1993). 법교육이 민주시민 자질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성일(1987). 고등학교 사회과 법학습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주희중 · 이명숙 · 박병식 · 이백철(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업소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청소년보호 정책자료 98-3.
- 최대경(1987). 고등학교 법률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윤진, 구창모, 정운성(1990a). 청소년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구창모, 정운성(1990b). 청소년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I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충욱(1998). 청소년문제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2호, pp. 17-32.
- 통계청(1998). 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교육개발원(1998).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인력구조.
- 한국교원대학교 제6차 교육과정 개발연구위원회(1992). 제6차 사회과교육과정개발연구.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문제론.
- 한기찬(1993). 재미있는 법률여행. 김영사.
- 한신우(1992). 법학개론. 신영사.
- 한준상(1997). 청소년문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Bortner. M. A.(1988). *Delinquency and Justice:an Age of Crisis*. McGraw-Hill.
- Hagan, John.(1987). *Modern criminology : Crime, Criminal behavior, and its Control*. Singapore: McGRW-HILL.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1999). *Juvenile Arrests 1998*, Juvenile Justice Bulletin. December.
- Waegel, W.(1989). *Delinquency and Juvenile Control*. Prentice-Hall.
- 菊地和典(1994). 少年保護事件の 收引.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藤原喜悅 외 2인(1986). 校内暴力の診断と治療. 敎育出版
- 法務總合研究所 編(1998). 犯罪白書 平成10年版.
- 上出弘지 伊藤隆二編(1984). 非行傾向のある子ども. 福村出版
- 守屋克彦(1998). 現代の非行と少年審判. 勁草書房.

- 永井憲一 編著(1998). 子供の人権と裁判. 法政大學現代法研究所叢書 17.
- 玉井美知子(1994). 心理と非行Q&A. ミネルヴァ書房
- 齊藤豊治(1997). 少年法研究 1(適正手続と誤判救済). 成文堂
- 第一東京辯護士會 少年法委員會(1998). Q&A 少年非行と少年法. 明石書店
- 澤登俊雄/比較少年法研究會(1991). 少年司法と國際準則. 三省堂
- 坂本昇一編(1996). いじめ指導のテキスト教材の開発. 明治圖書

<부록 1> 일본 소년사건에 대한 판례

고베 초등학교 연속살상사건 심판결정요지

제1 주문(主文)

소년을 의료소년원에 송치한다.

제2 인정한 비행사실

소년은

1. 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 35분경, 고베시 스마구(神戸市須磨區)의 노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여자아이(당시 12세)의 모습을 발견하자 갑자기 가방안에 가지고 있던 쇠팅치로 때리려는 생각이 들어 꺼낸 쇠팅치로 여자아이의 좌후두부를 1회 구타하는 폭행을 가하여, 가료 약 1주간을 요하는 두부외상의 상해를 입혔다.

2. 상기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에게 상기한 쇠팅치로 그 우후두부를 1회 구타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3. 동년 3월 16일 오후 0시 25분경, 같은 구의 노상에서 통행중인 초등학교 4학년의 여자아이(당시 10세)에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쇠팅치로 두부를 구타하여, 그 결과 동월 23일 오후 7시 57분 두개골 분쇄골절을 수반하는 고도의 뇌좌상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4. 동일 오후 0시 35분경, 같은 구의 보도에서 통행중인 초등학교 3학년의 여자아이(당시 9세)에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길이 약 13센티미터의 단도로 복부를 찔러 가료 약 14일간을 요하는 복부자상 및 외상성 하대정맥손상 등의 상해를 입혀,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5. 동년 5월 24일 12시가 지났을 쯤, 자택을 나와 자전거를 몰고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당시 11세)와 우연히 만나 이 아이라면 T산 정상 부근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남자아이에게 “저 산에 거북이가 있으니까 같이 보러 가자”고 하여 동일 오후 2시경 T산 정상에 케이블 안테나 기지국 시설의 입구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살의를 가지고 뒤에서 오른팔로 남자아이의 목에 감아 조이면서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가 장갑을 낀 양손으로 목을 조인 후 자신이 신고있던 운동화 끈을 빼서 그 끈으로 목을 조여 즉시 질식사망케 하여 남자아이를 살해하였다.

6. 동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오후 3시경 사이에 상기한 시설의 바닥에서 상기한 남자아이의 사체를 꺼내어 쇠팅으로 경부를 두부와 동체부분으로 절단하고, 동월 27일 오전 1시경부터 3시경 사이에 그 두부를 중학교 정문앞에 투기하여, 그 결과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

제3 살의에 대해 다룬 비행사실 3 및 4의 각 사실에 대하여

부첨인(付添人)은 비행사실 3 및 비행사실 4에 대하여 모두 살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들 비행은 소년이 흉기로 미리 준비한 두께 1.5킬로그램의 쇠파치와 길이 약 13센티미터의 단도를 사용하여 쇠파치로는 두부를 구타하고 단도로는 복부를 찌르는 등, 공격을 가한 부위가 인체의 중요한 부위이고 공격을 가한 횟수가 한번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적 살의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하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제4 소년의 경찰관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증거를 검토하면 아래의 조사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소년은 경찰관의 조사에 대해 2월의 사건(비행사실 1 및 2)과 3월의 사건(비행사실 3 및 4)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5월의 사건(비행사실 5 및 6)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으나, 당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 중에서 필적감정은 가장 증거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으며 과학수사연구소가 성명문의 필적과 소년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정하였기 때문에 체포장도 청구할 수 없었고, 임의조사에서의 자백이 최후의 보루였다는 상황에서 물적 증거는 있느냐는 소년의 질문에 대해 물적 증거는 여기에 있다면서 책상 위의 수사자료를 넘기면서 빨간 글씨로 씌여진 상기 성명문의 칼라복사본 등을 보이는 등, 마치 필적감정에 의해 상기 성명문의 필적이 소년의 필적과 일치한 것처럼 설명하여, 그 결과 소년이 물적 증거가 있으면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울면서 자백하였던 것이다.

조사관이 이처럼 소년에게 설명한 것은 물론 위법이며 조사관에 대한 소년의 비행사실 5 및 6에 대한 진술조서 전부를 형사소송규칙 207조에 의해 본건 소년보호사건의 증거에서 배제한다.

한편, 검찰관은 소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에서 말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하게 고지하고서 소년의 진술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독수과실(毒樹果實)의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년의 검찰관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안에서 언급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증거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제5 비행시의 정신상황

부첨인(付添人)은 소년이 기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으며 새디즘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충동적·폭발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본건 비행시 소년은 성인의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심신박약의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2명이 공동 작성한 감정서(이하 두 감정인의 증언을 포함하여 “공동감

정”이라고 한다)는 소년의 비행시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의 주문(主文)에서, 소년이 “비행시는 물론 현재도 현재성(顯在性)의 정신병상태는 없으며, 의식이 청명하고 연령에 상응한 지적 판단능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정한다. 미분화된 성충동과 공격성이 결합하여 지속적이고 강고한 새디즘이 과거부터 성립되어 있어서 본건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비행시와 현재, 이인(離人)증상, 해리(解離)증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건 일련의 비행은 해리의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해리된 인격에 의해 실행된 것도 아니다.

직관상(直觀像) 소질자로서 이 현저한 특성은 본건 비행의 성립에 기여한 하나의 인자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낮은 자기가치감과 결핍된 공감능력의 합리화·지성화로서의 『타아의 부정』, 즉 허무적 독아론도 본건 비행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인자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본건 비행은 “장기에 걸쳐 다종다양하게 그리고 점증적으로 증폭화하는 비행경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극한적 도달점을 구성하는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동감정은 소년을 의학적으로 검사·진찰한 후 심리테스트의 결과까지 고려해 소년에게 12회에 걸쳐 문진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충분히 수궁할 수 있으며, 이것과 소년조사표, 감정결과통지서 등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검토하면, 소년은 연령에 상응한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도 청명하다. 정신병이거나 정신병을 의심할만한 증상도 없으며, 심리테스트의 결과에도 정신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이 본건 각 비행시, 부침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성격적 편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심신박약의 상황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제6 소년의 성장경력과 본건 비행에 이른 심리적 배경

소년은 장남으로 출생하여 소년의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기대를 받아, 그후 태어난 동생들에 비해 엄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 때문에 소년은 점차 부모, 특히 모친에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소년과 동거하고 있던 할머니가 사망하였다. 할머니는 엄한 교육을 받던 소년을 감싸주었으며, 할머니의 방으로 소년이 도망치기도 하였다. 이 할머니의 죽음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때부터 소년은 울쟁이나 개구리를 해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심해져서 고양이를 붙잡아 해부하기에 이르렀으나,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자 동아리활동과 부모가 정한 귀가시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양이를 잡아 해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지자 고양이를 죽이는 욕동이 사람에 대한 공격충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후 2년 가까이는 살인의 공상에 빠짐으로써 성충

동은 공상 속에서 해소되고 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현실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욕동이 팽창되자, 학교에 가기는 했지만 학습의욕이 없고 교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친구와 놀지도 않고 혼자서 T산에서 놀았으며, 낮부터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 채 혼자서 지냈고 비오는 날을 좋아했으며, 살인망상에 괴로워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소년의 모친은 소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소년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리 이상하다고 괴로워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며 자신의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약속 강식의 세계이며 자기가 강자라면 약자를 죽이고 지배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의 살인충동을 정당화하는 독선적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배경으로 2월의 비행(비행사실 1 및 2)이 우발적으로 행해졌으며, 그에 뒤이어 얼마나 인간이 파괴되기 쉬운가를 시험하기 위해 3월의 비행(비행사실 3 및 4)이 실행되었고, 결국 5월의 비행(비행사실 5 및 6)에 다다르게 된다.

제7 처우의 이유

소년은 표면상 현재도 자기의 비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무서운 꿈을 꾸고 있고 피해자의 영혼이 자기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등, 마음의 심층에서는 양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표면상 반성의 언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년이 개전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숙련된 정신과의사에 의한 임상관정(정기적 면접과 경과추적)과 숙련된 심리관정원에 의한 정기적 심리관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년에게 표면상의 변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등, 신중한 관정을 기해야 한다.

소년은 자기의 생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양심이 눈을 뜨면 자기가 범한 비행의 중대성·잔학성에 직면하여 언제라도 자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년은 정신분열병, 중증의 억울 등 중증의 정신장애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예방하고 혹은 초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숙련된 정신과의사가 대체로 1주일에 한번은 검진할 필요가 있다.

소년은 연령적으로 인격 등이 여전히 발전도상에 있으므로, 향후 보통인간과 같은 죄악감이나 양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적인 기호도 통상의 방향으로 발전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을 당분간 혼자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낼 환경에 두고, 처음에는 1 대 1의 인간관계 속에서 애정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으며, 그후 서서히 여러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여 인간 교류 속에서 뒤떨어진 인지와 편향된

가치관을 시정하고 같은 세대와의 공통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회적인 상식이나 양식을 갖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기표현을 하는 힘을 기르는 등 현실적인 대인관계 조정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훈련에 의해 하나하나 가르쳐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의 부모, 특히 모친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다. 공동감정은 소년의 처우에 대하여 주문(主文)에서 소년법상의 구체적 처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소년은 본건 일련의 비행이 예후(豫後)의 엄격성을 시사하는 종류의 것이며 또 현재 연령적으로 인격이 발달 도상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죄악감과 양심이 향후 자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자각을 통한 갱생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다. 이 직면화에는 숙련된 정신과의사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심 혹은 죄악감은 양날의 칼이어서 직면화의 과정에서 분열증, 증증의 억울상태, 해리성(解離性) 동일장해 등의 정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소년은 향후 이들 질환이 잘 발생할 연령으로 들어간다. 또한 소년에게 법을 무시한 제재의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의 모든 것을 고려하면, 격리상태에서 향후의 정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처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피해감정에 대해 언급한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소년의 부모는 살해당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의 부모와 아직도 직접 만나지 않았으나, 살해당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부모와는 최근 변호사의 입회하에 직접 사죄한 바 있다. 그 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부모는 “소년을 버리지 말고 소년에게 본건의 책임을 충분히 자각시켜 주십시오. 또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소년을 충분히 지도감독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 법원은 소년과 소년의 부모가 이 살해당한 여자아이의 부모의 말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소년이 갱생하여 피해자·피해자의 유족에게 충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처우의 권고 및 환경조정명령

또한 본 결정과 동시에 당 법원은 처우기관에 대해 개별처우의 충실을 도모할 것, 소년이 충분히 갱생될 때까지 수용할 것, 장기의 수용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의 배려를 할 것, 소년의 치료와 교육에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가 스태프들을 붙일 것 등 처우에 관한 권고를 행하였다.

그리고 해당 보호관찰소에 대해 보호자 및 가족에게 소년의 갱생에 필요한 원조를 즉시 개시할 것, 그 원조에는 필요에 따라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충당시킬 것, 소년원과 긴밀하게 연계할 것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환경조정명령을 발하였다.

<부록 2-1> 교사용설문지

청소년지도 지침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지도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은 청소년행동 관련 법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법률상담사례집(“법으로 풀어가는 청소년비행”)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 7.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 137-715)

복지정책연구실 문제행동연구팀 (☎ 2188-8823, 8836)

※ 선생님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거나 자세히 써 주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_____① 남 _____②여

2. 선생님의 연령은? _____세

3. 현재 선생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_____① 학교 _____② 수련시설 _____③ 청소년회관
_____④ 청소년단체 _____⑤ 사회복지시설 _____⑥ 기타()

※ 다음은 청소년 지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기술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고, 막막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를 골라 O표 해 주십시오.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반반	거 의 어렵지 않 음	전 히 어렵지 않 음
1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해 잘 모르는 점	5	4	3	2	1
2 문제행동별 상담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5	4	3	2	1
3 비행청소년 처리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방법을 모름	5	4	3	2	1
4 청소년비행관련 법규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5	4	3	2	1
5 파충한 업무로 인한 실제적인 지도 시간 부족	5	4	3	2	1
6 문제행동별 적절한 지도방법/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부족	5	4	3	2	1
7 신변상의 불안(정신적, 신체적 위험을 느낌)	5	4	3	2	1
8 문제행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	5	4	3	2	1
9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전가(교사 또는 학교의 책임이라고 항변)	5	4	3	2	1
10 청소년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내 경제적, 심리적 자원 또는 능력 부족	5	4	3	2	1
11 청소년 자신에게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무기력감)	5	4	3	2	1
12 청소년의 반항/ 회피적 태도	5	4	3	2	1
13 문제행동 처리에 대한 학교당국의 경직된 태도 (학교장 또는 교도교사와의 갈등 포함)	5	4	3	2	1
14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교칙의 적용	5	4	3	2	1

※ 다음은 청소년과 관계된 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매 우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반 반	거 의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청소년을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관련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5	4	3	2	1
2. 법률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5	4	3	2	1
3. 청소년의 행동 중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처벌받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잘 모르겠다.	5	4	3	2	1
4. 비행을 저질러서 단속된 청소년이 법적으로 어떠한 <u>처리 절차</u> 를 받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5	4	3	2	1
5. 청소년비행 관련 법률을 몰라서 <u>답답한 적이</u> 많다.	5	4	3	2	1
6. 청소년의 특정 비행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u>처벌</u> 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른다.	5	4	3	2	1
7. 최근 바뀐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5	4	3	2	1
8. 평소에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침서가 있었으면 하고 느끼곤 했다	5	4	3	2	1
9. 법률지침서가 발간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지도할 생각이다.	5	4	3	2	1

※ 다음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정도와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를 골라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받는다	잘 모르겠다	처벌받지 않는다
1. 폭행은 하지 않고, 말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위	3	2	1
2.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을 한 경우	3	2	1
3. 절도공모 후, 다른 범인은 실행에 옮기고 자신은 행하지 않은 경우	3	2	1
4. 자신의 형이나 부모 물건 절도	3	2	1
5. 형이나 부모가 범죄자인 동생을 은닉 또는 신고불이행한 경우	3	2	1
6. 범인 친구나 이웃 사람의 범인 은닉 또는 신고불이행한 경우	3	2	1
7.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지만, 부모 허락 하에 취업한 경우	3	2	1
8. 음란전화걸기	3	2	1
9. 유해업소에서 나체쇼 행위자	3	2	1

※ 다음은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법적 처리사항과 법률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정도와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를 골라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1. 폭범소년과 우범소년의 법적 개념	5	4	3	2	1
2. 비행청소년 처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역할 및 차이	5	4	3	2	1
3. 소년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절차	5	4	3	2	1
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	5	4	3	2	1
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5	4	3	2	1
6. 보호관찰의 법적 개념과 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	5	4	3	2	1
7. 보호처분의 종류 (제1 - 제7호)	5	4	3	2	1
8.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차이	5	4	3	2	1
9. 보호처분소년이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처리	5	4	3	2	1
10.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청소년의 기준 연령	5	4	3	2	1
11. 교사의 체벌권(체벌 허용 정도 등)	5	4	3	2	1
12.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	5	4	3	2	1

※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 정도와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를 골라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1.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할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	3	2	1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아도, 청소년들끼리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다	3	2	1
3. 청소년들은 PC방과 만화방에 출입할 수 없다.	3	2	1
4.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2	1
5. 유흥업소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청소년(삐끼)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2	1
6.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다.	3	2	1

※ 만약 청소년들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도와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1 상습적으로 절도한 경우	5	4	3	2	1
2 무전취식 후 도주한 경우	5	4	3	2	1
3 타인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버린 경우	5	4	3	2	1
4 길거리에서 술취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친 경우	5	4	3	2	1
5 집단으로 동급생이나 후배를 폭행한 경우	5	4	3	2	1
6 집단으로 폭력씨름을 구성한 경우	5	4	3	2	1
7 동급생이나 후배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5	4	3	2	1
8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한 경우	5	4	3	2	1
9 가정에서 부모를 폭행한 경우	5	4	3	2	1
10 학교 유리창이나 기물을 파괴한 경우	5	4	3	2	1
11 가방에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경우	5	4	3	2	1
12 단속·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5	4	3	2	1
13 체포된 자가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경우	5	4	3	2	1
14 흡연·음주 하다가 단속된 경우	5	4	3	2	1
15 무단가출·무단외박·심야배회 하다가 단속된 경우	5	4	3	2	1
16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단속된 경우	5	4	3	2	1
17 가스·본드 등의 금지 약물을 흡입한 경우	5	4	3	2	1
18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5	4	3	2	1
19 청소년이 강간을 한 경우	5	4	3	2	1
20 돈을 받고 어른과 교제한 경우 (원조교제)	5	4	3	2	1
21 불법낙태를 의뢰한 경우	5	4	3	2	1
22 청소년이 보도업소를 차리고 유흥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소개한 경우	5	4	3	2	1
23 유흥음식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 경우	5	4	3	2	1

※ 다음은 성인 또는 업주가 청소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도와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있다	반반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1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자	5	4	3	2	1
2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자	5	4	3	2	1
3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5	4	3	2	1
4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	5	4	3	2	1
5	임신중절을 해 준 의사	5	4	3	2	1
6	고용금지 업종에 18세 미만자를 고용한 업주	5	4	3	2	1
7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한 업주	5	4	3	2	1
8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자	5	4	3	2	1
9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취업을 알선한 자	5	4	3	2	1
10	포르노사진·음란비디오를 제작하거나 반포 한 자	5	4	3	2	1
11	컴퓨터 통신망 홈페이지에 윤락행위 알선하 는 광고 게재한 자	5	4	3	2	1
12	유해약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	5	4	3	2	1
13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목욕 장면 등을 촬영 한 자	5	4	3	2	1

※ 본 연구진은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이 현장에서 청소년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 비행 관련 법률지침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침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거나 알고 싶은 법적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설문지에 수록된 문항 중에서 지적하셔도 무방하며, 현장에서 직면하고 계신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2> 학생용설문지

※ 다음은 중·고등학교 학생 연령대의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응답번호를 골라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1.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	3	2	1
2. 보호자 없이도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들끼리 출입할 수 있다.	3	2	1
3. 19세 미만 청소년은 만화방에 고용될 수 없다.	3	2	1
4.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호객 행위를 시키면 처벌된다.	3	2	1
5. 청소년들은 밤 10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	3	2	1
6. 단란주점 등에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	3	2	1
7. 19세 미만 청소년은 카페에 고용될 수 있다.	3	2	1
8. 어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처벌된다.	3	2	1
9.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처벌된다.	3	2	1
10.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을 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2	1
11. 절도공모 후 다른 범인은 실행에 옮기고 자신은 행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3	2	1
12.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소지만, 부모가 허락하면 취업할 수 있다.	3	2	1
13. 음란전화를 거는 행위는 처벌된다.	3	2	1

14. 내가 다니는 학교는?

____① 중학교

____② 인문계고등학교

____③ 실업계 고등학교

15. 나의 성별은?

____① 남

____② 여

16. 학교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편입니까?

____① 자주 하는 편이다

____② 가끔 하는 편이다

____③ 거의 하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3-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정 97. 3. 7 법률제529호]

일부개정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9. 2. 5 법률제5817호

일부개정 99. 3.31 법률제5942호(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술
- (2) 담배
-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 (4)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 (5)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5)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 (6)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권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매체물과 약물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관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동령명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동령명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제·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권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등급구분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함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납본)

①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장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구분·격리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이용금지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출입·이용금지업소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에 수록· 게재· 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동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준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시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관 준용한다.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성적절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듣는 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래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란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관계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7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등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기능

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립병원, 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치료·재활시설로의 지정
3.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교육·홍보·치료·재활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제5장 보칙

제37조 (시정명령)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이유명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의신청)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 (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조 (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인간의 청소년선도 · 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권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의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의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장 벌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출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 ·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 · 단체의 대표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

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 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록 3-2> 소년법 전문

소년법	
[전문개정 88.12.31 법률제4057호]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929호(소년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2조 (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송치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 (관할, 직능) ①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6조 (이송) ①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제7조 (송검)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 (조사방식)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가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조사명령)

① 소년부판사는 조사가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분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 (소환, 동행영장)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14조 (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는 위지와 발부연일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가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인선임)

①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 또는 변호사급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의 강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 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강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심리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판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 (심리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에 부하여질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심리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일변경)

소년부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심리의 개시)

① 심리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4조 (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제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① 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 (원조, 협력)

① 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불처분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 (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임규정)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군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연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3항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 (물수의 대상)

① 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물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있는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결정의 집행)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1항, 제3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 기타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와 의견제출)

①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동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제42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 (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 또는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증인등의 비용)

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요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

제43조 (항고)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조 (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 (집행의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7조 (제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제항고에 준용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8조 (준거법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

제49조 (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 (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49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급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6조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심리의 방침)

-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부정기형)

-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연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에 특히 분개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 (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68조 (보도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건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 (조회응답)

①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소환의 불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록 3-3> 근로기준법 발췌

근로기준법

[제정 97. 3.13 법률제5309호]
 일부개정 97.12.24 법률제5473호
 일부개정 98. 2.20 법률제5510호
 일부개정 99. 2. 8 법률제5885호

제5장 여자와 소년

제62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63조 (사용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급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6조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 (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인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0조 (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 (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

삭제 <99.2.8>

ABSTRACT

Understanding the Law for Instruction of the Adolescent Misbehavior

The research was organized to easily explain the current laws related to guiding the conducts of adolescent students for teachers in schools or social workers in fields and to provide a legal guideline for prevention and instruction of problems involving the misconduct of the adolescents.

In the light of such purpose, concepts were defined and categorized through studying the existing research and theories on misbehavior and crimes of juveniles and the current trend of juvenile crimes was assessed through referring to the statistics of the juvenile crimes. Also, a survey was done with a view to find out how the adolescents and the teachers are understanding the youth related laws. In examin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junior and senior high education in educating the law to the student, the meaning and the significance of law education is discussed. On the other hand, juvenile crimes mentioned in the Criminal Law Act were categorized into violence related crimes including inflicting injury, physical assault, intimidation, rape, sexual assault, violation of domicile

and property related laws including theft, burglary and murder, fraud, and blackmail. To summarize the laws that the instructors or the teachers taking care of the adolescent need to know, the process of solving a juvenile crime and the law and case concerned with treating the juvenile delinquents are suggested, centered around the adolescent law. The current regulations improvised to protect the adolescent from criminal and civil abuse were lis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actual legal cases consulted to legal institutions were collected, categorized, and introduced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of law application. The content of the research was integrated and organized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crimes through suggesting an alternative in the aspect of law education.

